

제416회국회  
(임시회)

#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24일(수)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업무현황보고(비금융)
  - 국무조정실 소관
  -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가보훈부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광개발(주)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정된 안건

- 업무현황보고(비금융) ..... 2
  - 국무조정실 소관
  -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가보훈부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광개발(주)
  - 한국소비자원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의사일정 제1항·2항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안건이었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상정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예.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좀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는데 연기가 된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일 당장 금융 관련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고금리 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당장 국회 정무위에서 내일 업무보고 때 금융위원장께 업무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의견을, 대안을 제시할 거는 제시하고 또 질책할 거는 질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내일 부위원장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

### 3.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무조정실 소관

나.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국가보훈부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 독립기념관

차. 88관광개발(주)

**카. 한국소비자원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시09분)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등 총 36개 기관입니다. 자세한 기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님을 보좌하여 적극 외교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약자복지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현, 미래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 및 저출생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금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최고치인 1.3% 또 상반기 무역수지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인 231억 불의 흑자 또 6월 고용률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 달성을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어서 IMF 등 여러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내각의 중심축으로 이러한 경기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여러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과 조언 또 지혜를 더 많이 여쭙고 소통해 나가며 정무위원회들과 함께 더 많은 국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 총괄과 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현안 대응과 함께 국무회의, 차관회의 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국정협의체를 통해 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규제혁신 과제 2200여 건의 개선이 완료되었고 약 132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며 46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평가를 통해 가시적인 국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내실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청년정책을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게 청년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추진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의 구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나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점검함으로써 고질적 부패들을 근절해 나가고 있으며 엄정한 비위 적발과 함께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납세자 권리보호, 세종·제주 및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문 국무1차장입니다.

남형기 국무2차장입니다.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입니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입니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성과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취약계층, 재난지역, 산업현장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민생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정당 등과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통해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 정책설명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을 보좌하고 총리실의 정무위원회 관련 업무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 현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민생 현장을 보다 잘 살필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과 함께 각종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국정 활동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계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비서실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기 민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수혜 공보실장은 대기실에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국가보훈부는 창설 62년 만에 부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웅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보훈 장애진단서 제도를 도입하고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봉환하고 최재형 선생 부부를 서울현충원에 합장하여 영웅을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모셨습니다.

이와 함께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참전과 보훈을 매개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보훈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보상금을 5% 인상하였습니 다. 또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심사·등록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별 의료 수요를 고려해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위탁병원을 확충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통해 유공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현충원이

오늘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한민국 보훈의 상징공간이 되도록 재창조하고 모든 국민들이 유공자를 위한 기부에 스스로 동참하여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캠페인을 더욱더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이 독립의 역사를 알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훈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가보훈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완 차관입니다.

이남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정책실장입니다.

황의균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경기 회복세도 확대되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일도 긴요한 시점입니다.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는 한편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서 4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많은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비해서 AI 등 새로운 시장의 혁신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엄단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신유형 피해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소비자 안전 기반 구축 등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나 금융상품을 이용한 규제 회피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의결권 제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 및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 공정거래 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홍선 부위원장입니다.

남동일 사무처장입니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입니다.

전성복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앓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앓아서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아마비 장애로 인해서 지체장애 4급이고 또 최근에 허리 협착 수술로 인해서 훨체어로 이동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무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고충처리, 행정심판, 국민소통과 제도개선, 부패방지 정책 수립·운영,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따뜻한 권익구제 그리고 반듯한 청렴사회를 기조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국민참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한 제도개선,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음부즈만, 소외지역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국민들께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관심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시험 실효성 제고, 장애인시설 운영 방식 개선 등 공정사회 구현, 취약계층 보호, 민생안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부패방지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서비스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1400여 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부위원장입니다.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상년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김웅태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가 심화되고 있고 챗GPT의 등장으로 전 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의 가속화로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인공지능 대전환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신뢰에 기반하여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집중관리 대상인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신기술·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기반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구체화하고 인공지능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을 선도하고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또한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의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혁 부위원장입니다.

이정렬 사무처장입니다.

고은영 기획조정관입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다기한 현안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등 대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정책연구의 허브라는 비전 아래 국정 현안 대응, 중장기 미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과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 정책연구의 전략성과 시의성 강화 및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정비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신뢰 받는 국가정책 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과 도전성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구조와 척우개선, 연구 클러스터 조성 등 연구 및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 플랫폼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방형 정책연구플랫폼 운영을 통한 연구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 이슈와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체계 구축,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적 과제와 복합위기에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직무대행 하유성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직무대행 하유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공단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단은 복지·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6개 보훈병

원 및 8개 보훈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도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의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해 점진적으로 회복되던 진료 실적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보훈병원 진료역량 제고와 더불어 재무 건전성 강화를 금년도 주요 사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7000여 임직원은 힘과 지혜를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공단의 경영 개선과 의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 한시준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1987년 개관 이래 독립운동과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와 같이 끈질기고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교육하는 기념관을 건립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고 자산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독립운동과 독립기념관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독립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 기획연구를 통한 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등 연구사업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참여 특별전을 개최해서 공감형 전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겨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과 독립정신을 널리 알려서 국가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외에도 독립기념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역사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기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독립기념관 구성원 모두는 독립정신을 지키고 널리 알려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천 88관광개발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관광개발(주)사장 서정천 88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정천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건설된 국가보훈부 소유의 88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해외 골프인구 증가 등 영업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내장객 18만 명, 순이익 136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년보다 강우일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마케팅과 고객 친화적인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골프코스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명문 골프장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실현과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구축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공익골프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보훈기금 증식을 위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설립된 이래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 권리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네 가지 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챗봇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조정의 환경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근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 물품의 신속한 차단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등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다소비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거래행위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크페더와 같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업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활동을 수행토록 지원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원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맞추어 소비자 권리 증진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직원 모두가 성실히 임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쟁조정을 통해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등 총 6개 분야에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 기준 총 1984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1879건을 처리하였고 조정 성립을 통해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약 549억 원의 피해구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둘째,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 운영, 공정거래 전문교육 등 다양한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선도하기 위하여 232개 기업 대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그리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기준 2061건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조정원은 상담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상생문화 확산의 일환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관련 시장 조사·분석 및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8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경쟁영향평가는 금년 상반기에 총 85개의 규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구제 업무와 공정거래 연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4개 연구기관장은 회의장 인근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불러서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박상혁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자료제출?

○박상혁 위원 자료제출 요구요.

○위원장 윤한홍 또 자료제출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는 한 1분만 드리면 되겠지요?

○박상혁 위원 3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상임위하고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자료제출 요구를 뭐 길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박상혁 위원 국토위에서는 5분씩 줬습니다, 5분씩.

○위원장 윤한홍 몇 분 하실 거예요? 보고 숫자가 많으면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승래 위원 2분으로 해요, 2분으로.

○박상혁 위원 아니, 3분 정도는 주셔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박상혁 위원님, 그러면 2분 드릴게요.

○박상혁 위원 3분 정도 주세요, 지난번에도 3분이었는데.

○위원장 윤한홍 아니, 여러 분 또 있으니까, 다른 분들 또 있어서 그래요.

○박상혁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야 다른 분들이고 저는 3분 정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질의를 못 해요.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 가지고 실랑이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윤한홍 하시고 부족하면 내가 더 판단할게요.

자료제출은 2분씩 드리세요.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이번 권익위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가 신고되었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좀 규명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혹시 대통령실과 교감 내지 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명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당시 올라왔던 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일체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회의록에 보면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제353호 안건, 이 안건은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 관련 사안으로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계속 비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회의록은 다 제출되어 왔고 이 김건희 여사 사건도 회의록이 제출된 바 있었는데 이 353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용만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참석했던 위원들 다 출석하셨나요? 왜 안 보이시지요?

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다음에 보훈부 송현숙 사무관 오셨어요?

○위원장 윤한홍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혁 위원 보훈부장관님, 송현숙 사무관 오셨어요?

○위원장 윤한홍 자료 요구하시라고요.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고 또 자료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한홍 추가적인……

○박상혁 위원 아니, 이따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안질의하겠지만……

○위원장 윤한홍 예, 그리하세요.

○박상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1차 질의 끝날 때 까지 자료제출 요구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배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추가적인 공직자 참석 문제 또는 참고인 참석 문제는 간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사무관 한 명 배석시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간사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또 누가 하시기로 했지요?

한창민 위원, 한창민 위원도 아까 자료제출 요구라 그랬지요?

○한창민 위원 예, 지금 박상혁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데요. 권익위 관련된 자료 요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늘 업무보고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고 6월 10일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종결 결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6월 10일 회의록 일부 말고는 거의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건 관련된 리스트를 제출해 줄 테니 다시 한번 자료와 답변이 충실하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만 출석했는데 실제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당연히 오셔 가지고 자료가 부족하면 그것에 관련된 답변을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도 하나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위원장님께서 항의해 주시고 자료와 관계자 그리고 답변이 충실히 오고 그다음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음,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아주 기괴한 결정,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종결이라고 하는 기괴한 결정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자료제출 요구를 권익위원회에서 많이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없는 자료도 제출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제가 7월 15일 날 보호·보상 업무의 합리성 강화 분야 관련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세부 기준안, 구조금 지급 관련 세부 기준안, 이것 왜 자료제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자료 왜 제출 안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명품백 디펜스하는 것, 방어하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명품백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어제 갑자기 무더기로 자료제출을 합니다. 유시춘 이사장 신고내역 회의록 그다음에 류희림 신고내역 회의록 이런 것 제출하라 그랬더니 어제 달랑 이렇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밀 누설이라 못 한다’ 이게 다예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어제 비밀 누설, 회의록 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뭐니까? 지난번에 디올백 관련해서는 회의록 왔잖아요. 왜 안 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아니, 뭐 재료가 있어야지 요리를 하지요. 이것은 대단한 도미 이런 것 달라는 것 아니에요. 밥 하려면 쌀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보상금 지급 세부 기준안 하나를 안 냅니까.

왜 안 내느냐? 보니까 다 안 내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자료도 안 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유시춘 이사장이나 류희림 위원장 신고내역 관련된 회의록 보면 디올백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관련된 얘기가 딱 대비가 되니까 대비될까 봐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겁하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신장식 위원 도대체 왜 안 내는 거예요, 왜!

○위원장 윤한홍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저도 권익위에 자료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결서 서명 날인한 게 있다면 그 원본 카피를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고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의 수발신 공문 원본 일체도 좀 카피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원본과 최초 합의되지 못했던 회의록 그다음에 안건 결정 일시 전체.

네 번째로 전원위원회 안건 결정 관련 일시 전체 및 안건을 위원에게 발송한 일시 그 것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과거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사건에 대한

권익위 결정례가 있으면 결정례 및 회의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렇게 오전 내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실 거예요?

조승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자료 요구를 뭐 이렇게 아끼세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러면 지금 질의 안 할 겁니까, 자료 요구만 하고?

(「질의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조승래 위원 그러면 김용만 위원까지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되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자료 요구만 하세요.

○신장식 위원 (책상을 내리치며)

아니, 질의를 할 수 있어야지, 자료가 안 오는데!

○李憲昇 위원 치지 말고 얘기해요, 치지 말고.

○위원장 윤한홍 조승래 위원 순서입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하고 제출 요청하시는 위원들 두 분 정도 더 받으시면 되지요.

지금 권익위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유동수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겠고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이렇게 자료 미제출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 주셨던데…… 아니,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신고자, 공익신고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다 공개된 사람들 아닙니까? 공익신고자 뭘 보호할 비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유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정무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안건 자료를 회의 전날, 일요일 날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건 자료라도 제출해 달라,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갖고 오셔 가지고 위원들 열람할 수 있게라도 해 주십시오. 열람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김용만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만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분명히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전체하고 송현숙 보훈부 사무관님 배석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요청드린 이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첫날 상견례 할 때 천준호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기타 등등 많은 위원님들이 국민권익위 청문회 하자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권성동 위원님께서 뭔 청문회를 벌써부터 얘기하냐, 우리 비금융 업무보고 있으니까 24일에 얘기 들어 보고 하자 이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번 양보해 가지고 그러면 전원위원회 전체랑 송현숙 사무관 배석해 달라 요청드렸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아니, 저희 간사님께서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문회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얘기부터 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얘기를 못 듣게끔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이유가 그것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도 못 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질문은 권익위원장한테 하시면 돼요.

○김용만 위원 아니, 권익위원장한테 질문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배석 요청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자료 요구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한 말씀 해 드릴게요.

○김용만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혁 위원님처럼……

○위원장 윤한홍 우리……

말씀하세요.

○김용만 위원 아니, 어찌 됐든 배석 요청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여당에서도 받아 주셔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간사 간의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전통입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 청문회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받아 주셔야지요, 이런 것 정도는.

○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많았어요.

○박상혁 위원 아니, 공무원이잖아요. 그냥 배석만 하면 되잖아요, 배석만.

○위원장 윤한홍 아니, 지난 정무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간사할 때도 많은 참석 요구를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못 한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김용만 위원 아니, 지난 정무위원회는 어떻게 됐고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요청을 드린 부분 아닙니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것에 맞춰서, 지금 신사적이고 질서 있게 하자고 말씀 주신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관행은 깨는 맛이 있는 거지요, 관행은.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잠깐만요.

권익위원장님, 자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는 빨리 제출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윤한홍 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제출하시고……

○박상혁 위원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신장식 위원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내요, 아무것도.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박상혁 위원 가공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내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는 다 제출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추가로 출석 문제는, 지난 21대 때 제가 정무위 간사 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추가 출석을 요청했지만 간사 합의가 안 돼서 출석을 다 못 했어요, 그때도.

○신장식 위원 그때 답답하셨잖아요.

○한창민 위원 잘못된 관행은 바꿔 주셔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간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면 청문회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김상훈 위원 잠시만.

저도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계속하시면 질의 못 합니다.

빨리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김상훈 위원님 시간……

○한창민 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아 보고 판단하시자면서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자료가……

○김상훈 위원 권익위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베켓리스트 의혹이 지난달에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는 예산 전용이나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조사 대상입니다.

2018년도, 대통령 공고에 보면 대통령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휘장을 사용한 경우는 훈령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인도의 공식 방문단장인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던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휘장기, 전용기 1호기를 타고 갔던 그 사실 그리고 인도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타지마할 방문 건이 포함됐던 그 경위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명장 의류를 구입하면서 거의 다 현금 특히 관봉권, 한국은행에서 발권한 신권 뭉치로 거래한 사실 이것은 아마 거래 흔적을 지우겠다는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디자이너의 딸 양인애, 프랑스 이름으로는 양이네스. 프랑스 국적자예요, 프랑스. 한국 복수국적자도 아니고 프랑스 국적자를 청와대 6급 행정관으로 채용한 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 등등의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도 대통령이 선물한 의상은 규정상으로는 대통령기록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김정숙 여사가 사적으로 가공을 해서 착용하고 다녔던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는지, 검토한 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그 자료와 함께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도 동시에 내 주세요. 저 자료만 내기만 해 봐, 하여튼 간에.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권성동 위원 이것 뭐 완전히 그냥 무슨 동네 복덕방이구먼, 여기저기서 얘기하게.

○강민국 위원 잠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위원장 윤한홍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다시.

○강민국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부처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또 제출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고요.

그런데 의사를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 데서 회의 도중에 책상을 두드리고 이런 것은 엄중히 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가 방해될 정도면 퇴장도 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저는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강일 위원 신장식 위원 퇴장하셔야겠어요.

○강민국 위원 잠깐,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이 청문회 이야기 계속하시는데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 사람은 있는데 특혜받은 사람이 없는 이재명 대표 헬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권익위에서 했지요. 그렇지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사실 권익위에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 김혜경 여사 법카 유용 그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명현 씨를 비롯해서 저번에 국감 때 증인으로 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강준현 간사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고요.

권익위원장에게 충분히 질의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로 존중하면서 발언 중에 관여하는 건 자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발언시간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출석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위원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권익위는 자료를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은 다 제출하세요.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받아야 됩니다. 지금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면 국민들 보고 있는데 신뢰를 받기 어렵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들어가시지요.

○강준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윤한홍 강준현 간사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자료 요구는 응당히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등 해서 권익위의 전원위원님들과 보훈부의 사무관 되시는 분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야 간사 간 협의사항이라고 말씀하는데 어찌 됐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례도 있었겠지만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제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시간은 간사님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느냐의 부분이에요. 거기 쟁점 중의 하나는 최재영 목사가 자신하고 그다음에 큰형, 딸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해 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유튜브라든지 시중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조사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시중에……

○**김남근 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최재영 목사나 이런 사람 불러 가지고 조사를 했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최재영 목사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근 위원** 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피신고자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김남근 위원** 신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KBS 보도에 의하면 최재영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월 28일부터 22개월 동안에 최재영 목사가 995번, 김건희 여사가 841번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안의 내용에 김건희 여사한테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관련 행사에 참석을 해 달라 이런 청탁을 한 내용도 나오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인의 그림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청탁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을 현충원에 매장해 달라 이런 식의 여러 청탁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청탁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청탁이 인정이 되면 직무 관련성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시중에 있는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좀 돼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시중에 있는 언론에 말고 신고인이나 최재영 목사나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최재영 목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김남근 위원**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최재영 목사 조사 안 했습니다.

○ **김남근 위원** 그러면 신고인인 참여연대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최초에 참여연대 신고하고 나서 참여연대 전화해서 필요한 자료 내용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 **김남근 위원** 전화해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라는 게 청탁금지법 14조 2항에 나와 있는 신고인한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된다 그 내용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전화해서 자료 달라 그려는 게 청탁금지법 14조 2항에 나오는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입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제삼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불러서……

○ **김남근 위원** 아니, 법령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세요, 기본적인 것을. 법령에는 분명히 청탁금지법 14조 2항에는 신고인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사실관계 조사가 어떻게 전화해서 자료 달라는 게 사실관계 조사가 돼요? 법령에 나와 있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남근 위원** 뭐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조사해야 됩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삼자 신고의 경우에는, 저희 국민권익위는 내부 신고라든지 주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불러서 하지만……

○ **김남근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충실히 조사를 하십시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삼자 신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김남근 위원** 대통령기록물 문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받을 때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조사 안 했습니다.

○ **김남근 위원** 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됐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습니다.

○ **김남근 위원** 의결서에 보게 되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의결서를 보시면 가사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 **김남근 위원** 그러면 법령상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기존에 그게 무슨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물었어야 되는데 외부인으로부터 명품백 받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걸 대통령기록물이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 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하지 않았습니다.

○ **김남근 위원** 왜 국민권익위가, 법제처가 그러한 유권해석을 해야 될 담당 기관인데 유권해석도 받지 않고 권익위 스스로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김남근 위원** 청탁금지법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했잖아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판단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합니까? 자기 게 아니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어야지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은 거야, 기본적인 것도. 기본적인 유권해석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지. 대통령기록물이 권익위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소관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청탁금지법 20조에 의하게 되면 공공기관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신고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조사했습니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아니, 나중에 보충할 때 1분 더 드릴 텐데 지금은……

○ **김남근 위원** 마무리만 하게 1분만 더 주세요.

○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1분을 뺍니다.

1분 더 드리고 나중에……

○ **김남근 위원** 그래서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신고 처리해야 될 담당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

○ **김남근 위원** 대통령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신고 업무를 담당해야 될 담당자가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같이 공범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어야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기록물인 경우에는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 **김남근 위원** 대통령기록물인지는 권익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하거나……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청탁금지법……

○ **김남근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행정관한테 맡겼는데 착오로 반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귀속되는 기록물이 아니라 반환해야 될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관이 착오를 하고 반환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권익위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결서에 지금 뭐라고 돼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의결서 읽어 보고 나온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김남근 위원** 의결서에다가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의결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승래 위원** 대통령 부인의 직무가 뭐야, 대통령 부인 직무가?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질의하신 분만 하시고……

○**김남근 위원** 아니, 의결서에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조사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남근 위원** 그러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는 판단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적어도 대통령실에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신장식 위원** 의결서 22쪽에 이게 뭐예요?

○**위원장 윤한홍** 신장식 위원님!

○**김남근 위원**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까, 그게 대통령기록물인지?

○**위원장 윤한홍** 자, 그만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김남근 위원**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뒷분에 관한 건데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시고 앉아 계시지요. 아무리 앞에 있는 위원장들께서 우리 국회를 갖다가 무시한다고 해서 뒤의 분들도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시비 거는 것 아닙니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앉아 계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죄송하지만 제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양해를 해 주……

○**김병기 위원** 앞으로 질의가 계속 나오고 그럴 텐데 저희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 질의보다는 염려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요새 권익위원회라든지 지금 여러 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면,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업무 행태를 보면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좀 가관입니다. 자료 요청 같은 것 대놓고 무시하고 국회를 기만하고.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에만 해당되

는 얘기 아닙니다.

국회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기만하고 우습게 알면 저희도 우습게 알고 막 대해도 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도 막 대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막 대하세요, 저희도 막 대할 테니까.

어떻게 국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9년 정도 의원 생활을 하는데요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대답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춰 주시지요.

모르면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기 쉽으면 대답하지 마시라고.

계속 질문하는데도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고 있던데, 김전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제1야당 대표가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결국 얘기를 들어 보면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을 살린 것은 모르겠고 행동강령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권익위라는 것 자체가…… 권익위만을 예를 들지요, 요새 이슈가 되니까 권익위를 예를 들겠습니다. 공정과 중립이 공무원의 생명이에요,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면 그리고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하실 만큼 경험하셨잖아요. 옛날에 공직자들이 제일 중시했던 게 뭐니까, 우리나라에서? 염치입니다, 염치. 염치가 없으면 옛 선비들은 짐승과 같다고 그래서 제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잘 새겨들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누가, 권익위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정승윤 부위원장이 답변하실래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무래도 이 업무는 집중적으로 분과위원장으로 겸하신 부위원장님이……

○**권성동 위원** 그러면 정승윤 부위원장, 앞에 나와 주세요.

중단시켜 놓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답변하세요. 안 들려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권성동 위원** 그렇게 자신감 없이 답변하지 말고 자신 있게 답변하라고.

죄형법정주의이고 누구를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익신고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하라고 통보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강령을 위반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혜 제공, 이권 개입, 알선·청탁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종결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 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행동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은 있는데, 201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직원들만 적용된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어서 2017년 이후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회 행동강령에 국회공무원들이 적용되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만약 그 국회공무원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 그런다면 이재명 대표도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조사도 안 되고 징계라든지 기타 그것에 따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일절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얘기할 게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권성동 위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부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래서 저희가 조사도 할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김건희 여사나 동일한 구조, 동일한 논리로 조사 를 못 한 거네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것도 제가 담당합니다.

○권성동 위원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JTBC가 단톡방 보도한 것 잘 알고 있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 권성동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보자 겸 평론가 겸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김규현 변호사인데 이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는 것을 짜 숨기고 마치 제삼자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면서 보도를 했어요. 결국은 그 보도 내용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혀진 사항인데……

이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참여연대에서 발표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권성동 위원 이 사람 공익신고자 맞아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내부신고자에 한해서 신고자 보호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공수처에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그것이 본인들만 아는 내부 관계에 있는 내부자인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답변할 수 없고. 다만……

○ 권성동 위원 아니, 참여연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고 그러던데……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들어온 바 없습니다, 현재.

○ 권성동 위원 들어온 바가 없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권성동 위원 참여연대가 23일 어제 호루라기재단하고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김규현 변호사를 대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어제 들어왔으면,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 권성동 위원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 권성동 위원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JTBC 인터뷰할 때는 제삼자인 것처럼 숨겨 가지고 했다가 그다음에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공수처에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언론에 대해서는 자기 신분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JTBC 뉴스룸에 나와 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익신고가 됩니까, 전부 다 허위로 보도한 건데.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만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24년 7월 17일에 천준호 위원님 실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진술 요청하셨는데, 맞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김용만 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반신고 접수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어떤 것 말씀입니까?

○ **김용만 위원** 지금 이 위반신고 사건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셨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최초 접수될 때는 사실은 법령에, 법률에……

○ **김용만 위원** 알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공무원 행동강령 권익위 행동강령과 담당 맞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만 위원** 그러면 직무태만이지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권익위 건데?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왜냐하면 법률을 해석하면 법률에는 국회하고 국회의원이……

○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권익위 쪽에서 참고인 천준호 위원님한테 의견 진술 요청 공문 보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김용만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언제 보냈고 언제까지 회신 달라고 하셨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번주…… 원래는 제가 지시하기로는 그 전 주에 보내라고 했는데 좀 늦어서 저번주에 보낸 걸로 알고 있고, 한 5일 정도 시간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만 위원** 5일 정도밖에 안 주셨는데 원래 규정상에는 7일 전이에요. 그렇지요? 7일 전에 주셔야 되고, 그걸 보내는 쪽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넉넉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사 요청에 있어서도 지금 지난 1월 16일에 착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천준호 위원님한테, 지금까지 뭐 하다가 6개월 만에 갑자기 요청하시게 된 겁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도 적용이 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피신고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불의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준호 위원님께서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 **김용만 위원** 알겠고요.

접수된……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알려 드린 것입니다.

○ **김용만 위원** 부위원장님!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 **김용만 위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접수된 신고사항 며칠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원래 원칙적으로는 60일 연장해서 90일입니다.

○ **김용만 위원** 그런데 90일이 지났는데 무슨 방어권을 논합니까, 이미 그 기간이 지난 건데? 아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권성동 위원도 이 안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물타기용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고 해 가지고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기간도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것도 조사하는 과정도 웃깁니다.

이것 안건 배부 규정상에는 얼마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4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셨습니까, 실제로?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실제로는 3일 전입니다.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일 배부도 많이 하고 전날 배부도 합니다.

○ **김용만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 대시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질문의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상을.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

○ **김용만 위원** 대답해 보세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용만 위원** 아니, 예상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말해 보시라고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 개인 생각을 답변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용만 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행태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님 피습 사건이 1월 2일에 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후보 피습 사건도 7월 13일에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 일어나 가지고 이송하는 과정에 문제를 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더 보안을 강화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타당 전 대표가, 당시에는 타당 대표지요, 대표가 죽을 뻔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송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는 법률만 판단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용만 위원** 아니, 법률 판단을……

그러면 의결서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박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법률 판단

하신 겁니까? 법률 판단 논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결서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 의결서는 다수의 의견으로 집적된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거기 계세요.

어제저녁 6시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재임됐습니다. 재임됐는데, 문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대통령 추천,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 5명만 참석해서 류희림을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호선했고요. 질문하는 기자들 피해서 전력질주 도주했습니다.

도주 대사에 이어서 도주 방심위원장 나왔는데, 권익위원회가加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해 주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길을 터 줬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무혐의로 길 터 주고 콜검 조사로 김건희 여사 혐의 털어 주려 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류희림 씨 셀프 민원사건 심의, 청부 민원 협의자 민원 사주 사건 있었지요. 그랬는데 여기서 언론 제보자 A 씨, 방심위 내부 직원이 공익신고 했지요? 받으셨지요, 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신고받았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위 셀프 민원, 청부 민원했던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인 그 가족들…… 왜 공정언론국민연대라고 있지요? 이사장하고 대표 출신 권재홍 등 2명이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 탄압에 앞장섰던 분들이 포함돼 있는 단체인데 이 분들도 공익신고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청부 민원 신고했던 분을 신고했지요, 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신장식 위원 확인이 왜 안 돼요? 결정을 며칠 전에 다 하셨으면서, 7월 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공익신고 침해로 신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 정승윤 부위원장님 권익위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등 등등 해서 서울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즉, 청부 민원 공익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를 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경찰에다가 이첩했어요.

이 이첩 결정은 해석해 보면 공언련과 류희림 가족 등 청부 민원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이고 그들의 민원은 공익신고인 반면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는 청부 민원 범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니까 수사받으라라고 하는 적반하장 결정이라고 보

이는데, 지금 이첩한 것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범죄자라는 거지요? 범죄의 소지가 있다라고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맞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렇게 돼서 청부 민원 공익신고자는 범죄자로 권익위원회에서 이첩을 했고요. 류희림 씨에 대해서는 종결했지요? 7월 8일 날,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신장식 위원** 방심위로 이관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방심위로 송부했습니다.

○**신장식 위원** 권익위원회에서는 불이익처분 안 하고 방심위로 송부했잖아요. 그래서 7월 8일 날 방심위로 송부하니까 어제 방심위원장으로 다시 호선된 거 아닙니까.

청구 민원 공개했던 A 씨, 공익신고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직 판단 못 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경찰로 이첩할 범죄 혐의자이기는 한데 공익신고자인지는 판단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어떤 꼴이냐,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까 권익위가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 고성방가라 하면서 목덜미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격입니다.

경찰에 넘길 때 이 공익신고자—처음에 비실명 신고했다가 권익위원회에 실명을 본인이 확인시켜 줬습니다—실명으로 이첩했습니까, 비실명인 채로 이첩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거는 밑에 좀 확인……

○**신장식 위원** 실명인 채로 이첩했어요, 비실명인 채로 이첩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식 위원** 만약 실명으로 이첩했으면 도둑이야 하고 소리친 사람을, 도둑은 안 잡고 이 사람 실명까지, 목덜미까지 잡아서 경찰에 이첩하는 겁니다. 이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는 권익위가 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언론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과 청구 민원 혐의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셀프 민원 당사자, 청구 민원 당사자 이익 침해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경찰에 넘긴 거는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암 수술하는 의사에게 암세포의 이익을 침해했으니까 경찰에 넘기겠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누가 우리 사회에서의 암세포입니까? 셀프 민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셀프 심사, 청구 민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공익 제보한 공익제보자입니까?

누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권익위원회예요?

○위원장 윤한홍 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실명 이첩했는지 비실명 이첩했는지 오전 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권익위는 반부패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자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스승의 날 꽃을 달아 줘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던 추상같았던 그 권익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권익위에 대해서 부패권익위, 건희권익위라고 하면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금 현재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 사망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정치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날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 관련해서 의결 처리했습니다.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 쇼입니다.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암살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부패를 감시하는 국가기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테러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 행위에 나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권익위에 신고된 게 언제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1월 5일일 겁니다.

○김현정 위원 피습 발생된 지 200일이 넘어서, 그렇게 된 시점에 갑작스럽게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것도 의아한 데다가 천준호 전 비서실장의 참고인 서면답변이 제출된 당일인 22일 날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했어요.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참고인 조사는 왜 한 겁니까? 이미 결론 내려 놓고 짜맞추기, 망신 주기, 보복조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빨리 조치를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천준호 위원님께 보낸 것은 천준호 위원님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그 의안을 올리면서 천준호 위원님이 혹시……

○ **김현정 위원** 방어권 보호 차원이면 받은 다음에 그거 다, 전원위원들이 다 읽게 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요. 아니, 23년 12월 달에 김건희 여사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건은 총선에 영향 줄 수 있다고 60일 만에 종결해라 하는 건을 6개월, 7개월 질질 끌다가 늦장 발표하더니……

오히려 지금이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고 협안질의가 진행되고 있고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이 그렇게 하면 더 의심받는 그런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왜 스스로 자꾸 권익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앞두고요 이 명품백 수수와 황제수사를 물타기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야당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당에게 맞대응하라고 재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뇌물을 받아서 명품백 수수한 것과 목에 자상을 입고 생사를 오간 야당 대표 피습사건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물타기를 할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본 위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어제 치료받은 행위 자체는 특혜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병원과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으로 유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위원** 저는 이런 황당무계한 괴변에 애꿎은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권익위는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 이런 규정을 해 버린 거예요, 국민들한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본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를 자임하고 야당 탄압의 선두에 선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무렵에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예측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위원**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금고가 열리면 문재인 권력의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 전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예요.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에 대한 해명은 보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2018년도 11월 인도 방문 건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공고 제7호에 보면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 대통령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휘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입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방문 단장인 도종환 문광부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승한 김정숙 여사가 탄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을 사용했다, 이거 법령 위반이니까, 아닙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 **김상훈 위원** 법령위반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상훈 위원** 규정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당시의 방문 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인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다고 돼 있지만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문광부 실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하이 레벨 델리게이션(high level delegation)만 요구했어요. 최고위급 또는 고위급 방문만 이야기했지 김정숙 여사의 방문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의 방문 건을 인도 정부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초 공식 방문지가 아니었던 타지마할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타지마할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출국 3일 전에 청와대가 인도 정부에 타지마할 관광 방문을 요청한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해명이에요.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건도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 달 인도 방문 시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대통령 부인이 7월 달에 선물한 바가 있는 인도 전통의상 사리, 이 사리는 인도인들에 따르면 바느질을 하면 옷의 영혼이 빠져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상인데 이것을 잘라서 본인 블라우스로 개조해 가지고 인도 방문을 했어요. 이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가공·착용해서 간 겁니다. 이것 법령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보도를 통해서 본 바는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법령위박인입니다.

저는 가장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김 여사가 의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단골 전통의상 명장 의류를 구입할 때 회당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의상을 여러 차례 그래서 현금 결제를 한 거예요. 그것도 관봉권, 한국은행에서 막 발행한 신권, 띠를 두른 이 관봉권으로 결제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이지요? 대통령 배우자가 사적인 의상 구입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활용하면 법령위반이니까,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보도는 본 바가 있고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법령위반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행정법원은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 줬어요. 정보공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측은 불복 항소를 한 겁니다. 뜻뜻하면 공개를 해야지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2심 진행 도중에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서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어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국민 앞에 뜻뜻이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샤넬에서 기증받은 명품 재킷 논란도 있어요. 이 재킷도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보관이 돼야 될 내용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킷을 개인적으로 착장한 이 사실 자체를 가지고 이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당연히 법령위반이에요. 이것을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국립한국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하지만 기증한 옷과 김정숙 여사가 착장했던 그 옷은 다른 겁니다. 이것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위치가 이쪽 발언대 쳐다보기가 좀 어려워서 저쪽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좋습니다.

○**천준호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저쪽으로 가세요, 반대편으로.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천준호 위원** 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이첩이나 송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제재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이 규정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이해합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일부 판단은……

○**천준호 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제재 규정이 없는 겁니까, 제재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판단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 대통령은 공직자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맞습니다.

○**천준호 위원**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맞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냐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판단한 것은 대통령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거기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치별 규정이 없다는 거지.

○천준호 위원 아니,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조항이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려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조항이 왜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이 안 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조문 자체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부분은 종결했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처벌 규정은 대통령께……

○천준호 위원 왜 제재 규정이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청탁받으면 제재 조항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재 조항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공직자에게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하면 바로 반환의무가 발생을 하고 신고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금품이 수수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지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님들 생각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천준호 위원 어떤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분들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천준호 위원 어떤 사실을 보고 판단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것은 본인들의 판단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권익위에서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안건 자료를.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조사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조사는 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조사를 시도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천준호 위원 조사 시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조사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를 보내라고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이런 조사 요청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위원님 부분은 법령에……

○**천준호 위원**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조사 요청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사 권한이 없지만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거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천준호 위원** 이렇게 국민권익위가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그런 청탁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누구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실에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려면 대통령실과 접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지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그런 것도 파악 안 되고 어떻게 국민권익위 업무를 합니까? 처음부터 봐주기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조사 제대로 안 하려고,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누가 담당자인지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이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권익위 전체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 대답을 좀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곤란합니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거나……

○**천준호 위원** 이게 왜 조사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누구하고 접촉을 해서 논의해야 하는지를 상대방은 알아야 그 기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법령에 의해서도 기관 조사는 당연히 하게끔 의무로서 되어 있어요. 기관은 협조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천준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천준호 위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또 하세요. 보충질의시간에 또 하시면 됩니다.

○천준호 위원 다른 분은 1분 줬는데 왜 저는 안 줍니까?

○위원장 윤한홍 지금 오찬시간 다 돼 가니까, 다음 위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준호 위원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위원장님!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너무 궁색한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한창민 위원 흐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강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린 겁니다.

○천준호 위원 1분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남의 기관에 대한 것까지 강요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타 기관을 가지고.

1분 더 드리시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위원장 윤한홍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그러면 본인이 대답을 안 하시고 모른다고 하시니까 김상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는 시간 동안은 좀 멈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하십시오.

○천준호 위원 권익위 부패방지국장님, 부패방지위원회, 권익위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전담직무대리 김상년 2004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로 전입해서 약 20년 정도 부패방지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천준호 위원 우리나라 부패방지 업무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부패방지위원회였고 그다음에 권익위로 그것이 계승되었고, 20년 동안 근무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청탁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전담직무대리 김상년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과 관련된 차원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간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드렸고요. 그것은 계속되는 질문일 경우에 그런 거고 지금 사람을 바꿔서 질문하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회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예의를 지켜 주시고 해야 품위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천준호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이런 겁니다. 법률 위반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위반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처벌 여부를 마지막으로 논하는 게 상식적인 법률 해석인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지막에 이게 처벌 규정이,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앞의 구성요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하셨어요, 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현장조사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상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PPT 넘겨 보세요.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청탁금지 위반 사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정조사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왜 이 사건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즉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상혁 위원** 있어요,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죄송합니다.

○**박상혁 위원** 없지요.

다음 PPT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며칠 걸렸습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90일이 조금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90일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대부분의 사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90일 이내에 처리됐는데 이 사건은 116일이나 걸렸어요. 충선 때문에 이런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충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까 부위원장, 법률만 해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참여했다가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 써 가지고 해촉됐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박상혁 위원** 정치인이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정치인, 무엇이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대선캠프에 참여한 사람이 정치인인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법률가입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라는 취지로 감사원 조사도 끝났는데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유철환 위원장님, 윤 대통령하고 서울대 동기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으시지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캠프에 참여하시고 인수위 자문위원 했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전문위원 했습니다.

○ **박상혁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에 참석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신 분이지요? 박종민 부위원장 또 서울대 동문이고 대선캠프, 인수위했던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의결과 관련해서 발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발언했습니다.

○ **박상혁 위원**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고 전현희 위원장 사건을 볼 때만 해도 회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발언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법령상 이해충돌되지 않습니다.

○ **박상혁 위원** 법령상 이해충돌이 되지 않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캠프에 참여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분 아니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유철환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정당 경력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해충돌 여지가 없어요? 국민들이 오해 안 하시겠어요? 부패방지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또 봅시다.

여기서 보면 아까도 나왔던 대통령기록물 여부, 아까 법제처 해석이나 대통령실에 이게 대통령기록물인지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법령해석 했습니다.

○ **박상혁 위원** 그럴 권리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보면 어떤 위원은 ‘이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블라블라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뭐냐? 예전에 아마 1월 초였나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했던 말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것 반환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을 갑자기 반환합니까? 잘못된 전제에 의해서 지금 전혀 다, 논의를 한 거예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지만 그다음 해에는, 2022년도니까 2023년도

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지고 논의하고서 지금 이게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게 됐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종결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도 보면 대통령기록물로 해석할 건지 아닐 건지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들 잘못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제처나 최소한 대통령실에 여부를 물어봤어야지요. 그런 것도 없지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후에.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티몬 때문에 난리난 것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재섭 위원** 이게 지난해 티몬을 비롯한 위메프 그다음에 인터파크까지 해 가지고 거래 내역이 한 7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티몬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판매자들은 이미 자연 정산이 되면서 철회를 하기도 하고 물품을 거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공정위가 21일 날 현장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떤지 일단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피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결국 정산 자연이라든가 미정산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정산 자연이나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사상 문제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닌 것이요 이게 지난해 큐텐이 인터파크랑 위메프를 인수할 때 공정위가 조건 없이 승인을 해 줬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몸집 키우기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큐텐의 재무상황 같은 것들이 좀 안 좋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건 없이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필이면 여름철에 또 이런 것들이 터져 가지고 당장 휴가를 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행상품과 관련해서 환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여행도 못 가고 환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공정위가 이것 단순히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냥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건 없이

승인한 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정위가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기업 결합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성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보아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시장에 독점 또는 과점을 강화한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특히 재무 상황에 관련돼서는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제가 그 심사에 직접 참여한 게 아니어서 지금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큐텐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좀 있거든요, 통신판매업자 신고하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슈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이게 일파만파로 번질 것 같고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많이 문제를 겪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하루라도 빨리 책임이 있는 대응 조치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소속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비서실장은 고 응우옌 푸 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 참석 관계로 부기관장의 대리 참석을 요청해 와서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를 하여 이를 양해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시간 1분만 드리세요.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고 심지어 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실무자들의 의견서를 제출이 어려우면 열람을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문자로 텍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법적인 테두리에 대한 판단을 권익위나 정부기관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국회가 권위 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에게 지시를 하셔서,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부 측에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은 유철환 위원장님, 자료 다 제출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 가능한 것은 제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은 일단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신장식 위원 뭐가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

○박상혁 위원 뭘 주셨어요?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 나 참, 뭘 주셨어요, 뭐?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그거 제출하지 않은……

○신장식 위원 제출하지 않고서는 뭘 다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셔.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우리……

○신장식 위원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야.

○조승래 위원 제출 목록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출 목록을.

○위원장 윤한홍 유철환 위원장님!

○신장식 위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죄송합니다. 제출했다는 말씀을 듣고서, 실무진 말씀을 듣고서 전했는데……

○신장식 위원 실무진 일어나세요!

○한창민 위원 실무진이 거짓말한 겁니까? 누구예요, 제출했다고 하신 분?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위원장 윤한홍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이강일 위원 제출하실 모양이에요. 앞으로 받아야지.

○신장식 위원 아니 아니, 제출했다고 하니까 뭘 제출했는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이강일 위원 준비를 했나 보지.

○한창민 위원 서로 거짓말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말씀 줄이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제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시고……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위원장 윤한홍**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은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세요.

그러면 일단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서 제출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행정기관에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권익위가 판단을 하되 내부적인 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이런 부분은 권익위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수석전문위원에게 권익위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윤한홍** 1분 말씀하세요.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 왜 전원위원회 위원들 배석 안 시킵니까?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박상혁 위원** 그다음에 보훈부…… 거기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여기 소속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보훈부의 사무관, 여기 지금 저분들은 무슨 근거로 나와 계세요? 많은 국장들 중에서 일부만 나와 계시잖아요. 저분들은 무슨 근거로 나오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사무관을 배석시킬 때는……

○**박상혁 위원** 저분들도 그러면 국장들에 대해서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어떤 국장은 나오고 어떤 과장은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관도 배석을 시켜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사무관을 배석시킬 때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상혁 위원** 여야 합의가…… 아니, 여야 합의했어요, 저 국장들 나오는 데?

○**위원장 윤한홍** 국장들은요 관례적으로 나오는 거고……

○**박상혁 위원** 다 합의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제가 오전에도……

○**박상혁 위원** 과장, 수많은 과장 중에 왜 저분들만 나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돼요.

- 위원장 윤한홍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 박상혁 위원 수많은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 위원장 윤한홍 안 했어요. 제가 정무위 간사 때도 안 했습니다.
- 박상혁 위원 저도…… 21대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지시하면 됐어요.
- 위원장 윤한홍 아니, 안 했어요, 그때도.
- 박상혁 위원 아니, 정무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했다니까요.
-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러니까 안 했다고요.
- 박상혁 위원 그러면 저분들은 여야 합의했어요?
- 위원장 윤한홍 합의를 안 해도 국장급 이상은 관례적으로 참석합니다. 참석합니다.
- 박상혁 위원 다 나왔어요, 저기 지금? 저기 다 나오셨냐고요. 안 나오신 분들 많아요. 과장들 중에서 일부만 여기 들어와 있어요.
-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 박상혁 위원 여야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공무원들이잖아요.
- 위원장 윤한홍 가서 의논 좀 하세요, 간사님들.
- 박상혁 위원 아니, 뭐 의논하실…… 위원장님의 지시를 하세요.
-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맞지 않아요. 사무관이 뒤에 앉아서 배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 박상혁 위원 나와서 출석해 있으면 저희가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한홍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제가 21대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박상혁 위원 아니, 보훈부의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 왜 저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또 밖에 있고요.
- 위원장 윤한홍 아니에요, 간부들이에요.
-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한홍 자, 그만하시고.
- 박상혁 위원 밖에 과장들도 있잖아요.
- 위원장 윤한홍 자, 그만하세요.
- 박상혁 위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봐야지요.
-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제가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시면 제가……
- 박상혁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이나 국회의 역할을 더 훼손시키고 계신 거예요.
-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1대 때 제가 간사할 때도……
- 박상혁 위원 외부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 박상혁 위원 뭘 정회를……
- 위원장 윤한홍 정회할까요?
- 박상혁 위원 지시를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국민권익위 설립 목적이 뭡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청렴사회의 구현과 그리고 또 국민권익 구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도 법률 1조 정도는 좀 암기하십시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청렴한 공직과 사회풍토 확립에 가장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기관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모두 다 권익위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의 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동수 위원 어려워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판사 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판사하시는 동안에 민·형사소송법상 스스로 회피 신청한 적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런 해당 사유가 없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유동수 위원 변호인 할 때도 기피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변호인으로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유동수 위원 없습니까?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 신청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제척사유에 있지도 않았고 또 회피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권익위를 거쳐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피한 건 왜 했습니까?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개개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 정도로, 저는 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이 아니면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평생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가장 엄한잣 대를 여기에 들어대야 된다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지 이 조직이 굴러간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판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인이나 학연, 혈연 등과 관계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회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회피 신청한 사례가 68건이나 됩니다. 피신고기관의 지인으로 근무했거나 피신고인과 고교 선후배거나 피신고인과 과거 동일 직장 근무했거나 피신고인의 법률대리인의 사유로 회피를 했고요. 심지어 2020년 3월 9일에는 부위원장이 피고인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표결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피 사유가 안 된다고요? 위원장의 양심에서 그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설사 본인이 주관적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국민권익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있는데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권익위만 계속 집중 질문을 받고 권익위 설립 자체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직을 보호하지도 못하잖아요. 평생 여기에 근무한 권익위 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장관님, 작년 12월 26일에 취임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화면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26일 날 장관님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을 계기로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소위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게 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혹시 알링턴 국립묘지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미국이요?

○柳榮夏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못 갔습니다, 아직.

○柳榮夏 위원 국립묘지 갔다 오시지 않았는데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만들겠다는 말이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것은 사실 제 개인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柳榮夏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알링턴 국립묘지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알링턴 국립묘지 전경이고요. 오른쪽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역입니다.

더 보실까요. 저게 무명용사 묘이고, 우주왕복선 희생자 기념비입니다.

혹시 이 서울현충원 프로젝트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전임 장관이 발표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희는 아직 예산을 확정짓지는 않았고요.

○柳榮夏 위원 전임 장관께서 3000억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았지만 이 특정 예산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받은 적 있으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당시에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형극장을 조성하고 서울현충원 정문 앞 대로와 동작 주차장, 공원 등의 지하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한강변과 녹도를 만들어서 이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혹시 장관님 취임하시고 서울현충원에 지난번 6·25 기념식 말고 현장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앞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저는 서울현충원을 많이 갔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 그러셨지요.

그러면 한강공원에서 현충원까지 가기 중간에 올림픽대로 있는 것 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거기 녹도를 어떻게 조성하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현충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柳榮夏 위원 장관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가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요 한강공원에서 일직선으로 해서 녹도를 조성해서 도보로 이동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강공원에서 현충원까지 가는 길 중간에는 올림픽대로가 있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올림픽대로에서 광장까지는 또 올라가는 경사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 옆에 반포천이 있어서 9호선 반포역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것 지하 3층이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거기 지하 공간을 조성하면 지금 다니는 교통망을 어떻게 해소한다고 생각, 그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 시절에 발표를 했었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여러 번, 저희가 심도 있게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일관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柳榮夏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자료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보훈부에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전임 장관께서 3000억 정도가 들어가서 한다 그래서 달랬더니 딱 저 두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물론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갖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고 500억 넘으면 예타도 진행되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임 장관께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듣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후임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프로젝트 안에 이러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오늘 올 때 노들길로 와 봤어요. 혹시 정말 녹도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나, 대개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이런 국가 정책을 실현할 때는요 조금 현장 조사도 보시고 좀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1분을 더 주시면 다음 시간을 제가 1분을 빼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그렇게 하세요.

○柳榮夏 위원 그리고 어제께 날짜로 아마 서울현충원이 보훈부로 이관이 되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오늘 날짜로 되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의장대, 군악대 있고 영현봉송병 있고 초병이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제가 정확한 인원은 군 대외비라서 말씀을 안 드리나 한 삼백 내외 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랑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아직도 의장대와 군악대가 국방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대답을 못 받으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아닙니다. 다 완결되고 오늘 이관을 받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柳榮夏 위원 장관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관련되는 그런 협의체를 담당하는 국장과 관련되는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오후 질의 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혹시 잘못 기억을 하셨으면 정정해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추가로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한홍 예, 하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방금 전에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가보훈부 혼자서 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동작구라든지 관련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님 시절에 물론 많은 검토를 거쳐서 예산도 3000억을 하셨고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의견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현충원 프로젝트를.....

○위원장 윤한홍 그것 보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저희가 지금.....

○위원장 윤한홍 그냥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관련 부서를 모아서 보훈부가 주도적으로 하셔야지요.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아닙니다, 예외를 하면 안 되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일단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보훈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앉아 계시는 유철환 위원장님도 잘 들어 주십시오.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알겠습니다.

○ **이강일 위원** 나오는 것도 카운팅되는 거예요? 초가 벌써 줄었어.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 **이강일 위원** 아니, 제 시간 말이에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잘 못 들었습니다.

○ **이강일 위원** 잘 들어 주십시오. 자꾸 휴대폰 하고 계셔 가지고……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 **이강일 위원** 최재영 목사가 고발인인데 조사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이강일 위원**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조사 권한이 있다 없다 이전에 판단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셨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

○ **이강일 위원** 자, 보세요. 조사 권한이 있고 없고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려다 보니까 조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조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선행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고발에 대한 것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신고자만 기본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인 조사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 **이강일 위원** 이것 보세요. 뭐가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라든가 이게 타당한 고발이었는지 이런 판단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권익위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닙니다.

○ **이강일 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까, 고발할 내용에 대해서?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당연히 판단하지요, 위원님.

○ **이강일 위원** 그러면 판단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지요. 그것 조사 권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지요.

○ **이강일 위원** 자, 보세요. 조사권이 없다는 것은 강제권이 없다는 거지 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권이 없다는 거지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고발인을 불러서 협조를 요청하든지 간에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이번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것 보세요. 여태까지 답변하는 것 보면 필요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조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아예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판단이 돼서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부인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조사를 못 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자, 보세요. 처벌 규정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지 조사를 하고 안 하 고는 또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말장난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면 하되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이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처벌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아니,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조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이강일 위원** 됐어요.

지금 권익위가 기한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조사 권한을 몇 가지나 넘겼어요, 헬기 사 건도 그렇고.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의도적이나 아니면 무지한 거냐. 의도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무지한 거라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까? 조사 기간을 합법적인 법이 규정한 기간 이내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사건이 많습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들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강일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말했듯이 말장난하는 게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관계 당국에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 들은 바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이강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 대해,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소방청의 답변을 보면 헬기 요청 권한이 없는 의사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결과에 적용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내부에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강일 위원**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제출해 주세요.

부산대병원도 별도 헬기 요청 매뉴얼이 있지는 않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부산대와 관련해서는, 헬기 요청 매뉴얼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강일 위원** 아니, 참……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대로 된 것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저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 **이강일 위원** 청와대하고 어떤 통로로 통화를 하십니까, 소통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직접적인 통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은 800-7070으로 전화받으신 적 없어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없습니다.

○ **이강일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위원장님은?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죄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강일 위원** 부위원장님은 받으신 적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런 사례 없습니다.

○ **이강일 위원** 없어요 아니면 몰라요? 뭐예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없습니다.

○ **이강일 위원** 없다고 대답한 겁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없습니다.

○ **이강일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윤한홍** 이야기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께서 지시하실 때 소방 헬기가 떴습니다. 가덕도에서 다치셔서 바로 59분인가 떠서 10분 안에 부산대학교 외상센터 옥상에 헬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 이송했고 부산대학교 외상센터에서 필요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과 뒤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은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앞에 있는 그 헬기는 문제가 없고 잘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이강일 위원**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 플레이를 하니까. 앞에서는 호의적인 것 하고 뒤에서는 다른 것 하잖아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권익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부위원장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이.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부위원장님이 답변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민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저쪽으로 위치해 주십시오.

김영란 전 위원장님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TV로만 봤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분이 청탁금지법을 이렇게 완성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17년에. 청탁금지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한창민 위원** 오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내용을 보니까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 받는 문항이에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의 문항을 만들어 낸 곳이 권익위입니다.

저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

○**한창민 위원** 모르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

○**한창민 위원**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이 자리가 뭐 시험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창민 위원** 잠시만요. 멈춰 주세요,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저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받으셨지 않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 법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교육을 합니다, 제가.

○**한창민 위원** 그러면, 저 답이 2번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겨 주시지요.

저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영상 보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봤습니다.

○**한창민 위원** 다음으로 넘겨 주시지요.

저 300만 원 영수증이랑 확인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봤습니다.

○**한창민 위원** 다음 넘겨 주십시오.

혹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관련된 시리얼넘버 확인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유튜브로 봤습니다.

○한창민 위원 확인하셨나고요, 번호. S0204OVRB.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 부분은 처음 봅니다.

○한창민 위원 처음 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한창민 위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명품백 사용 여부 그다음 포장이 뜯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명품백으로 교체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 조사나 사실 조사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초 조사도 없이 그냥 종결 처리하신 것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창민 위원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 제가……

이것 누가 이야기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 11일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상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돼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

이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단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도 필요없고 법적 자문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

○한창민 위원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 본인이 한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어떤 법률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한창민 위원 그러면 직무 관련성의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한창민 위원 뭇 다수결이에요? 이것을 다수결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저희 위원회의 다수……

○한창민 위원 그러면 법적 자문 받으신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다수결로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 위원회는 위원들의 개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도 그중의 1인일 뿐입니다.

○한창민 위원 그런데 왜 주도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는 사무처장이고 제 업무가……

○한창민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이해충돌 사유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하고 회피하거나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공직자들? 아까 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세 분 오히려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주도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못 믿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단정하고 기초 조사도 안 하고 법적 자문도 없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의결했다고요? 장난하십니까?

우리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조장해야 될 기관의 수장들이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노골적인 방식으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권익위원장님, 2003년 5월 22일에 광주지검에서 그 당시 광주의 모 구청장 부인을 구속했어요. 그 이유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뭐 이런 것으로 한 거거든요. 구청장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부당한 인사나 뭐 등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부탁했다는 내용들이 이것하고는 좀 죄질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청탁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직무하고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청탁금지법에도 해당되고 만약에 직무와 연계가 없다,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뭐 이런 걸로, 과거 구속되고 처벌받았던 사례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건데 권익위에서는 둘 다 아닌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2003년 5월 22일 광주지검에서 다루었던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구청장 부인은 유죄고 대통령 부인은 무죄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법의 형평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가 권익위에서 법의 형평성에 맞게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하지 않을까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는 청탁금지법만 다루었고요. 그리고 또 여쨌든 저희 판단은……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지요.

지금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전부 몇 명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이 사건에서 말씀이십니까?

○**이인영 위원** 아니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전체가 몇 명쯤 된다고 보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우리나라의 전체 공직자들은 다 포함되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대략 한 240만 명쯤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본 적은 없어서……

○**이인영 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지요. 제가 맞으면 단정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240만 명쯤 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부패시장이 얼마만한 규모로 양산되는 건지 아세요? 7조가 넘는 그런 부패시장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김건희 여사 한 개인을 놓고, 이게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 법의 형평성과 그다음에 부패 방지의 어떤 구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또 말이 막 바뀌잖아요. 이게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기록물로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 또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법만 다루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통솔하는 그런 사무처장이나 부위원장의 어떤 인터뷰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로 보더라도 국가 재산으로 바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인터뷰도 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기록물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한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마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사실상 논리를 보면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다 해당되지 않는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다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권익위원장이 아무리 이게 뭐 자기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조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까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도 조사라도 하라고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부분은,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인영 위원** 왜 모르지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위원장 패싱하고 권익위원회 막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물어본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비밀누설금지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영 위원** 말을 바꾸는 거지요, 지금? 알고 있었는데 비밀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 이런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뭐 조사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인영 위원** 있었던 것으로는 알아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없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부위원장이 조사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유철환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으로 권익위가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참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는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안 보인다는 거지요. 권익위는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건으로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신뢰도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 존재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화하고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꽂길을 깔아 줬습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권익위의 존재가 과연 이유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권익위 위원들과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해충돌방지법상,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이해충돌방지법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제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

공하였던 개인의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승윤 부위원장님의 경우에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장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정승윤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은 제가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 위원장님이니까 법령,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이신데 이거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는 어쨌든 제척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척사유가 있으면 회피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고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면 14일 이내에 회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돼 있고, 그 주무관청인 위원장님께서 이 규정도 모르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문 위원**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 제척사유가 있으면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는 그런 판단만 하였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삼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결론은?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요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이 있습니다. 2024년판이 있는데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고 설명이 돼 있고 그 예로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 등을 타 법률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의 공범, 제삼자 뇌물 취득 또는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인지 왜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에, 권익위에 신고 전에 검찰에 고소 고발이 돼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정문 위원**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시 보내 주는 절차를 취했어야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문 위원**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이정문 위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저희가 갖고 있던 자료는 우선 신고인이 제출한 언론 보도 자료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참여연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공한 자료만 달랑 가지고 결국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정 한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들은 어마어마한 결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일종의 죄형법정주의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하고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리고 또 새로운 증거가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면 저희 종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가법이 될 수도 있고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데 수사하도록 보냈어야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보냈겠습니다 마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종결 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때문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답변하면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자료 그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료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지금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막 받았는데요. 아까는 구두로 말씀을 해서 했는데 자료 요구하신 것은 다 제출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다만 한창 민 위원님께서 6월 10일 전원위 의결문과 회의록 외의 참고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유동수 위원님께서 신고사건 관련 수발신 목록 이것도 저희가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원위 하루 전에 송부한 안건 이것도 제출이 불가하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구하신 것은 다 제출된 것으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질의 답변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소방청이 별도의 헬기 요청과 관련된……

○위원장 윤한홍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아니요, 질의가 아니라 아까 확실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얘기해도 되지요, 자료 요청?

○위원장 윤한홍 예.

1분 드리세요, 1분.

○**이강일 위원** 그래서 권익위 결과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 그랬었거든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까 부위원장하고 대화, 문답하실 때 말씀하신 거지요?

○**이강일 위원** 예, 맞습니다. 소방청의 그런 규정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질의 답변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부산대병원까지 속전속결로 잘 이송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늦게 도착해 가지고 치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다치고 나서 부산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타임별로 어떻게 어떻게 뭐가 몇 분 걸리고 뭐가 몇 분 걸려서 어떻게 진행돼서 부산 병원에 갔다 이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어렵지 않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요, 그것은 소방본부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고서 제출 여부를 말씀드려야……

○**이강일 위원** 답변을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요, 그건 부위원장님이……

○**이강일 위원** 답변을 했는데 모르고서 답변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했으니까 그 답변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이강일 위원님,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강일 위원** 예, 두 가지 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료 준비됩니까,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지금 실무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료 드리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저도 자료 관련해서 하나, 웠는데 안 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준비 중인가……

○**위원장 윤한홍**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다 죽 설명을 하셨어요.

○**신장식 위원** 아니요, 제가 오전 질의에서 위원장님 소위 청부 민원 공익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이첩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인적사항 특정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제가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가요?

○**신장식 위원** 아니요, 정승윤 부위원장님 답변 중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건 나중에 하시지요. 그것 자료제출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닙니다. 자료가 아니고 그 당시에 비식별 처리했느냐고 여쭤봤는데 비식별 처리해 가지고 실명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자료 갔습니다.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부산 진구을 출신의 이현승 위원입니다.

오늘이 제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우리 정무위 첫 번째 소관 업무보고 자리인데 오늘 보니까 12개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 권익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고 또 사실 우리가 쿠팡이나 배민 문제 등, 공정거래위 등 정말 우리 쟁여야 할 민생 분야의 질의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상임위장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그 내용을 보고 상임위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아래야 되는데 오늘 그럴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공정거래위라든지 다른 준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님께서 권익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조금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님,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수수 금지 의무 규정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건 있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이 정말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권익위에서 2018년도 2건, 2019년도 2건, 20년도 1건, 21년 1건, 22년 1건, 24년 1건입니다. 이 8건 다 종결 처리됐고 이 가운데 대통령과 배우자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은 올해 1건 그게 종결된 겁니다.

이 자료 파악 못 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죄송합니다. 제가……

○李憲昇 위원 1건도 없다니요, 8건이나 있는데? 상임위에 나오시면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번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권익위가 종전에 하던 업무 패턴대로 처리를 했는데 영부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혜를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조사 중에 있는 경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저는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명품 수수 여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말, 저는 몰카 공작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백 김건희 여사에 전달한 최재영 목사, 자신이 청탁했다고 하는 내용을 모두 촬영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청탁 내용이 뭐니까? 어떤 내용을 청탁을 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법률적으로는 저희는 유의미한 청탁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보통 청탁이라면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건데 그래서 청탁금지법에도 청탁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딘가 청탁한 내용이 널리 공개된다면 이게 무슨 청탁입니까?

최재영 목사는 전 국민에게 모두 공개를 했으므로 해당초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직무 관련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를 곤란에 빠뜨리고 국정 혼란을 일으킬 명백한 의도로 만들어진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여연대에서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을 위반했다고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법조문을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이 되므로 직무 관련성이 성립되기 어렵고 최재영 목사 본인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8조 4항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권익위원회께서는 제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견해에 저희가 공감하고 그런 취지로 다수 의견이 결의가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재명 대표 지난번 1월 달에 피습됐는데 정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요. 닥터헬기로 부산대 권역별 외상센터 이송하신 것은 정말 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왜 분노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부산대병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별 외상센터로 지정되고 아주 우수한 의료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 이송한 닥터헬기 비용 누가 지불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가 알기에는 헬기, 소방본부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애꿎은 소방본부 공무원들하고 부산대병원 의사들만 이번에 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서 ‘정작 헬기 탄 건 이재명인데’, ‘특혜 맞다’, ‘공무원만 처벌받는다’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한 것 중에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된 전원위원회에 송부된 의견서, 위원들에게 전달된, 그것을 열람이라도 하자 그랬는데 열람도 못 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의 해석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 그 해석을 한 결과 권익위의 판단과 우리 국회의 판단이 같은 겁니까, 자료 요청 관련해서요?

○위원장 윤한홍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회의 과정에서는 어떤 얘기든지 오갈 수 있고 갑론을박이 얼마든지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노출하지 않고 그게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나면 결론 난 그 부분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저도 공직자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고 그래야 정부의 신뢰가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야기든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염려해서 권익위에서 자료 열람이라든지 제출을 못한다고 한 것 아닌가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권익위원장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은 갑론을박이 아니고……

○위원장 윤한홍 아니지요. 회의가 열리면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조승래 위원 그 위원들에게 전달, 송부된 의견서를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전체회의가 결론이 나면 그것은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겠지요.

○조승래 위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자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지요. 권익위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한 거지요.

○조승래 위원 아니지요. 국회 자체의 판단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회의를 거칠 때 갑론을박하는 것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석전문위원이든 아니면 국회 법제실이든 검토를 시켜서 저는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시키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예.

질의하십시오, 5분.

○조승래 위원 하루 종일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이 참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이현승 위원께서는 유사한 사례들이 8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크게 부각도 안 됐고 언론의 주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런 말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조승래 위원** 그러면 유사한 예가 있을 때 또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유사한 사례 같으면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전 국민들한테 청탁을 할 때는 배우자에게 하면 된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청탁 무슨 조장법……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그렇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입법을 할 때 청탁금지법 8조에 배우자에 대해서 금품을 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왜 넣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당연히……

○**조승래 위원** 지금 권익위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선언적 조항이고 이것에 관련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래서 종결했다는 취지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이 조항 그러면 삭제하실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조승래 위원** 아니지요. 이것 국민들한테 혼란을 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조승래 위원** 아니, 권익위의 판단을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해도 된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는 직무와의 관련성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품 수수는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조승래 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건 분명하다, 그것은 권익위 방침이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거기다가 아울러 직무 관련성도 저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보통 그렇습니다. 방기선 실장님께—갑자기 혹 질문해 가지고 당황하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건 법률상 미비나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처분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매뉴얼을 이렇게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라고 공직자들은 적극행정을 하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권익위는 그러면 이 조항을 들어서 면죄부를 계속 남발하고 계시는 건데 이 조항이 갖고 있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까지 규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들어내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배우자 처벌 조항을 입법, 법률 개정안을 내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저는 적어도 권익위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해 봐야 되겠지요. 그것에 따라서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받을 것 정도는 해야지요. 그래야 그게 권익위원회로서의 권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참고가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정말 약속하신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청렴교육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와서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그런데 되게 좀 부끄럽기는 하지요, 우리가 오늘 이런 대화하는 게. 대한민국 영부인이 어쨌든 백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국민들 보는데 이야기하고 있고 권익위원장님은 ‘나 잘 모르겠는데, 부위원장이 해 가지고 판단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자료 보자고 하면 ‘판단에 대한 자료를 보여 줄 수 없다’고 하고 논리 구성은 완성돼 있어요. 오늘 제가 죽 하는 것 말씀 다 들었더니 논리는 몇 개 딱 정리돼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논리인데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청탁금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권익위원장님 계시고,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할 사람인데요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가 그 자료를 볼 때가 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권익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이었고 또 우리가 오늘 속기록에 남긴 말들이 어떤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반드시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논리로 국민의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저나……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정무위원입니다. 누가 저한테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주면 이건 잘못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제 아내가 받으면 괜찮습니까? 이건 물론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상임위나 지역구랑 상관없다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호의적인 선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러니까요, 없다면 그냥 300만 원짜리 정도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와이프들이 다 받아도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강훈식 위원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그럴 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위원 그러면 그건 국회의원만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저기 뒤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부인들이나 남편분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받아도 되는 거지요?

답변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

○강훈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렸는데 답변하십시오. 받아도 되는 거지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그런 것은……

○강훈식 위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저 뒤의 분들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답변드리기가 참 또 애매합니다.

○강훈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뒷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영부인은 받으셔도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훈식 위원 뭐가 구체적인 겁니까? 이것 되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판사님 출신이신데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 소신 정도는 믿어 볼 것 아닙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남편이나 사모님들이 받으시는 것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강훈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300만 원 정도는 받아도 괜찮은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현행법상에는 어쨌든 처벌, 제재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훈식 위원**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똑같은 이야기를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딱 이렇습니다. 청탁금지법상에 공무원의 배우자는 300만 원 정도는 아무런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받아도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강훈식 위원** 아니, 권익위원장이잖아요.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강훈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법에는 괜찮다라는 것을 묻잖아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강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받아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받아도 좋다, 괜찮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훈식 위원** 아, 처벌 조항이 없지만 받으면 안 될 것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위원**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씀……

○**강훈식 위원** 말 그렇게 돌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만 말하면 움찔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인이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 못 하고 김건희 여사 물어보면 ‘제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권익위원장 보면서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청렴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게 오늘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혹시 알테쉬라고 아십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강명구 위원 중국 전자상거래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1200만 명이 넘는 국내 회원을 모집했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회원 수에 비해서는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처참한 수준인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발표했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바로 오늘 오후에 저희 개인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에 관한 조사 내용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기 상임위원회 오느라고 회의 주재를 지금 하지 못하고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 강명구 위원 내용이 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강명구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별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실태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시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그런데 테무의 사례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테무는 제품 발송과 통관업무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위치한 ECWHARF라는 회사와 일본에 위치한 Jieli라는 회사에 우리 국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개인통관번호, 여권번호, 6개 항목을 이전한다고 고시했어요.

제가 이 법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실제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봤더니 ECWHARF는 싱가포르 회사가 아니고요 중국 산둥성에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소개를 살펴보니까 20년 넘게 중국 내 한국물류 전문기업 회사예요. Jieli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 상하이시에 있는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TOP World라는 회사도 한국에 소재한 회사고, 실질적으로는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물류 전문회사인데 그렇다면 테무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교적 개인정보 보호가 안전한 국가들이라고 여겨지는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 이전한다고 해 놓고 따지고 보면 실제로 중국에 다 보내 버리는 것 아닌지, 이것 소비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위 기망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 법에서는 외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 관련해서 소비자한테 알려 주고 동의받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와 관련한 절차를 테무가 적절히 이행했는지에 관해서 조사한 바를 오늘 논의하고 있습니다.

○ 강명구 위원 저는 어쨌든, 화면 잠깐 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를 일체 정보라고만 기재했어요. 이것조차도 소비자는 알리가 무슨 정보를 넘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가, 지난 6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저희 사무실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이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합당한 처분을 당연히 내릴 것으로, 오늘 논의 결과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지요.

○**강명구 위원** 만약에 법에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 가지고 테무처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처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령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위원** 유철환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

○**강준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탁금지법에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그런.....

○**강준현 위원** 예,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가액 등등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준현 위원** 그러면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러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대통령기록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맞지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들은 어쨌든 기록물인지 여부도 판단을 유보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강준현 위원** 좀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

무와 관련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하니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앞뒤가 다른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께서는 최 목사가 무슨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명품백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가.....

○**강준현 위원** 호의를 베풀려고요, 아니면 청탁을 하기 위해서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직무 관련성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강준현 위원**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더라도 명품백을 들고 찾아왔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 명품백을 들고 갔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본인 진술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강준현 위원**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영 목사가 국립묘지 안장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행정관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 공개된 건데.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봤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후에 보훈부 송 모 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응대를 했어요. 민원인이 대통령실의 행정관과 통화를 하고 정부 부처 사무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피드백을 해 주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강준현 위원** 보훈부장관님,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말씀하시지요.

○**강준현 위원** 여기에 보훈부 송 모 사무관이 나오는데,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보훈부 송 모 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응대를 했어요. 민원인이 대통령실의 행정관과 통화를 하고 정부 부처 사무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피드백을 해 주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나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적입니까? 보통 이렇게 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국가보훈부에는 많은 분들이 안장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담당 공무원들은 그에 따른 답변을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도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강준현 위원** 과정을 잘 보시고, 잘 모르시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같은데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언론에 최재영 목사가 밝힌 청탁 민원 내용만 총 4건입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위원장님, 4건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본 바는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본 바가 있으십니까,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강준현 위원**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준현 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언론을 통해서만 봤다는 말씀입니다.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오늘 우리 국민들이 정무위원회의 하는 걸 보면 참 질리겠어요. 그렇지요? 계속 같은 질문이 도는 데 제가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 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소비자원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좀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약속된 시일에 받지 못해서 결제대금 약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티몬하고 위메프의 월간 이용자 수가 900만 명이고 거래액만 월간 1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지연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위원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강민국 위원** 특히나 지금 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국민들이 다 여름 휴가, 1년 내도록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고 가족들하고 여름 때 한번 휴가 가는 참 유일한 낙이고 희망인데. 그런데 여름휴가 앞두고 여행 상품을 두 플랫폼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이 전부 다 취소·환불 통보가 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거래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소비자원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이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 그러니까 여행사 그리고 티몬, 위메프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소비자들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휴가 한번 가려고 1년 내도록, 국민들이 가족들하고 한번 놀 유일한 낙인데 그 부분 반드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강민국 위원** 카드깡 해 봤어요, 카드깡? 카드깡이 뭔지 압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뭔지 알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강민국 위원** 물건을 개인적으로 개인카드로 구매한 이후에 이를 취소하고 그 개인카드로 카드깡 하는 것도 문제인데,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건데 개인이 카드로 구매해서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이걸 다시 결제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 법인카드가 공무원 카드 같으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횡령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경기도청의 수행했던 조명현 씨 그리고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소연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렇게 진술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가 말이지요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개인 초밥세트, 한우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샴푸까지 특정해서 쓰던데 권익위에서 지금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가 답변……

○**강민국 위원** 그래요, 정승윤 부위원장님 나오시든지 누가 좀 답변해 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님이 그때 아마 처리하신 것 같은데 한번……

○**강민국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조명현 씨가 참석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수사기관에 송부를 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첩을 했습니다, 당시에.

○**강민국 위원** 권익위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전원협의체나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반드시 대검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걸?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당시에 이첩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이유는 뭐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법카는 공직자의 법카기 때문에 공직자의 법카가 불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의 전형적인 부패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1000만 도민을 위해서 농업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에 쓰라고 준 그 카드를 이재명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것 엄청난 비도덕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여하튼 저희는 도덕의 문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배소연 씨 보니까, 저번에도 내가 조명현 씨 작년 국감에 증인으로 하다가 민주당에서 한번 간곡히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철회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청문회 이야기 여러 가지 하니까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고……

추가질문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위원장 윤한홍 오늘 권익위 업무보고가 되어 버렸는데요, 사실상. 아까 제가 쭉 답변을 들어 보면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 백 관련해 가지고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 지금 그거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처벌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사실 공익……

○위원장 윤한홍 수사 중인지, 제가 확인만 합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권익위 사항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도 종결 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권익위에서 종결했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당연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8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위원장 윤한홍 그 8건도 똑같이 종결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제가 기억을 아까 못 했습니다만 종결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다 그래서 공무원, 공직자 부인이 300만 원 백을 받았는데 가능하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 권익위에서 처벌은 못 해도 수사기관 사항은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것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 질의 중에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의 일이에요. 가덕도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헬기를 띄워서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거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현승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가 다 되었는데 거기서 더 좋은 병원 가겠다고 서울대병원 갈 테니까 헬기를 띄워라 해서 서울로 헬기를 타고 간 것이 특혜다 해서 문제가 된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일반인들은, 저도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지방 병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또 실력이 못 미더워 가지고 서울로 많이 갑니다. 그럴 때 앰뷸런스 불러서 서울 가게 되면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요. 그때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그러면 비용도 자기 비용 없이 갔으니까, 그것도 부산대학병원 경남·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병원이에요. 거기서 응급처치가 끝났는데 헬기를 동원해서 그것도 비용 부담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갔으니까 특혜다, 그거를 지금 했는데 그것도 행동강령에……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전원 지침……

○위원장 윤한홍 국회의원은 대상이 안 되니까 종결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면 또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거를 권익위원장께서 정확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일버무리고 답변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풍산개를 데리고 양산 사저로 갖고 가서 키웠어요. 키우다가 건강이 안 좋은지 어쩐지 풍산개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한 달에 250만 원인가 든다 해 가지고 그거를 대통령기록물이니까 다시 가져가라. 여러분, 그 기사 보셨나요?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본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 겁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집에 가져가 가지고 키우다가도 풍산개 키우는 데도 돈 많이 든다고 대통령기록물이니까 다시 국가에서 가져가라. 그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박상혁 위원 에이, 그게 아니지요.

○조승래 위원 왜 지나간 얘기를 해요. 왜 지나간 얘기를.

○박상혁 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관계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제가 기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혁 위원 기사? 사실관계가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제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 어떻게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김용만 위원 발언 책임지셔야지요, 그러면.

○박상혁 위원 사실관계가 그게 아니잖아요.

○김상훈 위원 사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신장식 위원 질문을 잘하셔야지, 질문을.

○위원장 윤한홍 중간에서 끼어드시지 마시고.

그런 정도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거는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잘 하고 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 뜻에서 하시는 거고 오늘 제가 답변 보면서, 권익위의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답변을 못 한 거예요. 우리 부위원장도 그렇고 권익위원장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반복됐는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권익위원장 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지금 표현을 위원장님이 하셨고 권익위원장이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1분간, 신상 1분 드리세요.

○천준호 위원 조금 전 위원장께서 질문하시기를 헬기 이용과 서울대병원 치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달에 목에 칼을 맞고 사경을 헤맬 때 이용했던 헬기 이용과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것이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특혜라고 심사를 하고 있다고 물어본 거예요.

○천준호 위원 특혜라고 물어보셨고 우리 위원장께서 특혜가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말 너무 엉터리고 뒤죽박죽입니다. 어저께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께서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사실, 서울대병원 치료받은 사실은 특혜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순서를, 절차를 위반한 것 그것이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내용을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을 유도하셨고요. 그리고 권익위원장께서 그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신상과 관련된, 저의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조승래 위원 그거 바로 잡아 주세요!

○박상혁 위원 이거를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시든가요.

○위원장 윤한홍 참, 사과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음 보충질의를……

○천준호 위원 (책상을 내리치며)

이게 왜 사과할 일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지금. 제가 무슨 특혜를 받았어요?

○김상훈 위원 진행합시다, 진행.

○위원장 윤한홍 잠깐, 잠깐만요.

○강명구 위원 책상 치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한홍 이거를요……

○조승래 위원 어떤 게 특혜라는 얘기예요?

○천준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잘못하셨잖아요. 잘못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강민국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김상훈 위원** 진행합시다.

○**위원장 윤한홍** 무슨 얘기를 잘못했어요?

○**이강일 위원** 바로잡아 주세요!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합시다. 회의 진행 중에, 이런 분위기에서……

○**천준호 위원** 특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한홍** 예?

○**권성동 위원** 정회하세요.

○**천준호 위원** 잘못된 답을 했고 바로잡으셔야지요, 속기록을 삭제하시든지.

○**이강일 위원** 속기록 확인해요, 속기록.

○**천준호 위원** 무슨 특혜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일반 국민들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일반 국민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천준호 위원** 아니, 권익위원회에서 어저께 바로 발표한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천준호 위원**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특혜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저께.

○**위원장 윤한홍** 제가 특혜라고 보는…… 그래서 공익신고된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권익위에.

○**천준호 위원** 그 말씀을 취소하셔야지요. 조금 전에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왜 취소를 해요?

○**천준호 위원**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속기록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일반 국민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으니까 특혜라고 권익위에 신고된 거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조승래 위원** 권익위원장이 정확하게 정정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권익위원장, 정정하세요!

○**신장식 위원** 부위원장이랑 위원장님이랑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1분 쓰셔서 6분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보충질의했다 그래서 그걸 또 1분은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김남근 위원** 그럼 빨리 정승윤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오전에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금품 수수한 걸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여기 지금 의결서를 보면 ‘이 물품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의결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예비적 판단을 한 것도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결서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민권익위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법령을 해석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거는 사실 명확하게 의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러니까 이 물건이……

○**김남근 위원** 그러면 이 의결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러니까 이 물건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된 가방이냐에 관련해서 저희 다수 의견은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부합이 되려면……

○**김남근 위원** 두 가지 판단했어요, 두 가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기록물이 됩니다.

○**김남근 위원**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고 대통령기록물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선서를 안 하고 하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닙니다. 법령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선서도 안 하고 하니까 막 허위로 얘기하고 왔다 갔다 얘기를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무슨 말씀…… 의결서가 공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남근 위원** 다음에는 김정대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정대 총괄과장도 거기 참여했습니까, 조사 과정에? 조사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위원님, 죄송한데요 개별적인 그 사건의 조사 대상이라든지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제출을 못 하듯이……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누가 했냐, 어디 부서에서 했는지 묻는 거예요.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위원장 윤한홍** 마이크를 입에 좀 대고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예.

신고 사건하고 관련된 세부 조사 대상·범위·주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자, 그러면 일반적인 걸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신고 사건이 들어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럼 기본적으로 신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지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14조 2항에 의하면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로. 일반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신고인인 참여연대를 불러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그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몰라서요 답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청렴정책총괄과장이잖아요. 부패방지 문제, 청렴 문제와 관련된 업무부서에 있는데……

그리면 어디 부서에서 누가 조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조사도 안 했다 그리고 조사를 한 담당자도 없고 그럼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저희가 통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프로세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에 정해진 요건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확인 내용은 인적사항을 해서 실명으로 해야 되고 증거가 있는지……

○**김남근 위원** 아니, 신고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세요. 신고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탁금지법 14조 2항에.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신고인,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냐를 지금 묻고 있고 왜 그런 프로세스를 이 사건에서는 안 했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왜 답변 못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김남근 위원** 그럼 다시 정승윤 부위원장님 나오세요.

왜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고인을 반드시 소환해서 대면으로 조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전화라든지 구두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김남근 위원** 전화해서 자료 낼 거 있나 이렇게 전화하는 게 사실관계 조사입니까? 그래서 참여연대 이런 데들을, 신고한 사람들을 나오게 해 가지고 대질을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전화 한 통 건 거 가지고 사실관계 조사했다고 지금 허위의 진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 가지고 자료 낼 거 있나 물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사실관계 조사가 돼요. 사실관계라는 게 직무 관련성에 관해서 최재영 목사가 어떤 청탁을 했냐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사실관계 조사이고 대통령기록물이라 그러면 외교사절이 줬나 외교관계나 의전에 따라서 이걸 줬냐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사실관계 조사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라면 대통령실의 담당자가 누구고 그 담당자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 신고 사건을 처리했냐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사실관계 조사인데 그런 걸 신고인한테도 하지 않았고 최재영 목사한테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담당자한테도 하지 않았잖아요. 뭘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 프로세스에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걸 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무슨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 누구를 상대로 무슨무슨 조사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김남근 위원**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와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는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무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뭘 했어요? 뭘 했냐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러나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건 밝히지 말고 뭐뭐 했냐만 물어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죄송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에게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럼 이 사실관계 조사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누가 담당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사무처에서 조사는 담당합니다. 사무처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사무처에서 누가 담당을 했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구체적인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담당 부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사기관에서?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지 국회에 와서 그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야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질책받을 일이 있으면 제가 질책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근 위원** 질책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위원장님도 법률가 아니에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김남근 위원** 법률가가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 규정에.....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남근 위원** 대통령기록물이 뭐다라고 판단하려면 판례 조사하고 유권 해석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해 놓고.....
- **위원장 윤한홍** 김남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 **김남근 위원** 지금에 와 가지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도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법조인이라면 어떤 기본적인 해야 될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본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디서 조사를 했냐고요, 어느 기관에서.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인데.....
- **김남근 위원**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니까 국민권익위에 암흑의 시대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 .....
- **위원장 윤한홍** 다음 질의,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섭 위원** 도봉갑 국회의원 김재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오전에 제가 티몬과 관련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순한 대답보다는 조금 더 공정위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문제가 간단하게 끝날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은 분명히 오늘부터 쟁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고요.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재섭 위원**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가 외식업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배달의민족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잘 인지하고 계십니까?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재섭 위원** 배달의민족은 시장점유율이 제가 보니까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 **김재섭 위원** 그러면 배달의민족이 최근에 배달 중개수수료를 올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섭 위원** 몇 퍼센트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6.8%에서 9.8%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럼 그거 몇 퍼센트 올린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3%를 추가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3%가 아니지요. 3%p가 올라간 거고 정확하게는 44%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돈을 내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44%가 오른 것이고 그것은 자영업자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살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달의민족이 이 중개수수료를 올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운영상의 어려움 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달의민족의 재무제표들을 좀 보니까요, 범인 감사 보고서 내에 있는 재무정보를 좀 봤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배달의민족은 2023년에 매출액이 3조 4155억입니다. 영업이익이 6998억입니다. 해외 배당은 그중에서 412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성 자산 규모는 4387억 원입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공정위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것 좋지요.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독점적 그리고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거짓된 이유로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저는 공정위가 여기서 칼을 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취임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지 제가 알고 싶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단체 일부에서도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에서 가격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지남용의 경우에 가격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저희가 그런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난 7월 23일에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 등을 포함한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고요. 10월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재섭 위원** 속도를 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배달의민족이 게르만의민족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데 배달의민족의 모회사가 독일에 있는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회사인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회사는 우리 배달의민족과 비슷한 불공정행위로 인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례에서 대한민국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내지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모회사는 정작 독일에서 과징금을 맞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회사가 불공정거래로 인해 받은 과징금을 우리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대신 떼꿔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슷한 불공정 사례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독일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물론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 국내에서 배달 3사의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최근에 현장 조사를 나간 바가 있고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재섭 위원** 물론 독일에서 받은 과징금과 대한민국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해외 배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127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배달의민족에서 벌어들인 돈을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의 법 위반 사항은 독일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는 국내에서 벌어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분명히 우리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이미 모회사가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정위가 법이 없어서 내지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가격남용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문제에 직접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카카오 모바일에는 제재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제재조치 하지 못하시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카카오 모바일은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개입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가해지는 그런 제재조치인데 계속 ‘이게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하루를 다투고 촌각을 다투면서 일을 하는데 공정위가 이걸 손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전에 공정위가 선제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지남용, 가격남용 자체를 가지고 법 위반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발족해서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를 최대한 유지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 입장에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는 ‘법이 미비해서’, ‘조사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평계가 나오는 와중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고혈이 짜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유철환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말씀하시지요.

○**김용만 위원** 아까 모두발언하실 때 국민권익위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아마도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께서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의 배우자분들께서는 3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처벌 조항이 없다 수준에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바꿔서 답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대로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같은 입장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권한에 과연 이 명품백이 얼마만큼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맞으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2017년 권익위 해설집 판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여부가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다’.

그리고 24년 해설집도 나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의 의미의 항목에서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의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독자적 결정권이 없지만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데도, 우리 대통령의 직무가 아까 보여 주신 것처럼 최재영 목사가 보훈부에 이장을 하느니 마느니 얘기할 때 그렇게 넓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상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무슨 문제가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어쨌든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답이 돋니다. 그렇지요? 이게 답을 정해 놓고 오셔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MBC PD수첩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한테 설문조사해 봤더니 권익위 종결 처리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가 70%예요, 타당하다가 27%. 권익위 결정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69.8%.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배우자가 받으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웃긴 업무보고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결서에 보시면 판단이 2개가 있었지요. 권익위가 예비적 판단으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셨어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김용만 위원 PPT도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아까 전에 판단을 한 적이 없다라고, 오전에 김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부위원장께서는 판단 안 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한 것 맞으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다시 질문을……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권익위가 예비적 판단으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맞으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긴 한데……

○김용만 위원 부위원장께서, 뭐 누가 됐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세요.

기사 하나 읽겠습니다. 7월 10일 기사고요.

‘정승윤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라고 주장만 반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제처에 의뢰해 가지고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판단하신 건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대통령기록물로 단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판단을 하시다가 업무 보고가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였으면 의결서에 올라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법제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선 제대로 된 해석을 받았어야 되는데도 올라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추가질의하면 명품백 받으신 것, 한두 달 사이에 추가로 받은 고가 화장품, 고가 위스키, 책 등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건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냥 질문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예비적 판단을 하신 상태에서 갑자기 업무보고 오셔 가지고 그게 번복이 되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은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상태로 얘기를 해 보자면 대통령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쳤던 저서 여덟 권 중 4개 습득했어요.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저렇게 팻말까지 들고 나와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던 분께서 그러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것 권리위가 발표한 대로 기록물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책 등 선물로 받은 것, 이것 무단폐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말씀하신 건 저희가 가정 판단을 했습니다.

소수의견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이 되는 경우라면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무단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의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의결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어찌 됐든 관련성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무단폐기, 방치, 훼손은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맞으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 처벌조문 이런 건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대통령기록물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이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이면 돼요.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1분 드리시지요.

○**이인영 위원** 지금 부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짜증이 너무 많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죄송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저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사과도 필요하지만 다시 저런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님 주의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민국** 알겠습니다. 그건 이인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정부 부처에서 답변하실 때 국민의 대표들이 여야를 떠나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저쪽으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 가지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판사 출신이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사실관계 조사하고 사실 판단하고 해당되는 법률 조항 가지고 포섭하고 그래서 법률 판단하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신장식 위원**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사실조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실무진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 **신장식 위원** PPT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회의록 15쪽, ‘사실조사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보면 자료상으로 아무리 봐도 신고내용 외에는 사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음’ ‘국민권익위에서 사실조사를 별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이나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이 이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수가 상당히 있다고 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회의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최선을 다해서 사실조사를 해요? 신고내용 말고는 사실조사된 게 하나도 없다고 회의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중인 선서 안 하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셔도 돼요?

신고내용 말고 하나도 없다고 회의록에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중인 선서하고 해야지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신고내용 말고 사실관계 조사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이것 뭐니까? 거짓말로 제출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회의록이 거짓말입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어느 위원이 기록을 잘못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님.

○ **신장식 위원** 그러면 이 위원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이 위원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몰았어요, 이분을. 여기 비실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을 지금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위원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분이 착오하신 겁니다, 위원님.

○ **신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오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 해야 됩니다. 중인 선서하고 누가 거짓말했는지 따져야지요.

전원위원회 회의록 이것 뭐니까? 사실관계 조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했습니다. 1회 회의록 나갔는데 2회, 3회 전체로 보시면 내용이 좀 더 나올 겁니다.

○ **신장식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주세요. 유일하게 제출한 회의록이 이것 하나 아닙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2회, 3회 확정하는 대로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위원** 다음, 사실관계 조사, 둘 중의 한쪽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선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고서 말고는 아무것도 사실관계 조사를 한 게 없다라고.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누군가는 착오를 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 필요합니다.

조사 기간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표 보여 주세요.

이 조사 기간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정민영 방심위원, 야당 추천이지요. 10일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 198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116일,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설 업무추진비 소고기 파티 의혹 6개월, 180일.

아까 정 부위원장님이 ‘사건이 많아서 선입선출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위 정부 여당의 상대편에 있다는 조사는 10일만에도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심위원사주 의혹이라든지 또는 류희림 방심위원 198일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일 플러스 30일, 90일이 조사 기간이지요, 원래 정해진?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것들 쭉 보면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조사 기간 중에 90일 넘은 것은, 사례는 딱 1%입니다. 나머지는 90일 안에 전부 다 해결됐어요. 그 1%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설 업무추진비 소고기 파티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런 것 들어가 있어요. ‘권익위가 1% 방탄을 위한 권익위다’ ‘용산의 하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듣는 것 아닙니까?

다음 PPT 보시지요.

그중에서 한번 대표적으로 봐요.

정민영 방심위원 10일 조사했습니다. 류희림 198일이에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 의혹 며칠입니까? 34일 조사했어요. 이렇게 빨리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116일 했어요. 이게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조사하신 겁니까?

세 번째, 정 부위원장님, 아까 ‘수사 중인 사건은 종결하고 이첩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가 그렇게 답……

○**신장식 위원**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건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첩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라고 얘기했지요, 수사 중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가 그렇게 답변한 사실 없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유철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구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신장식 위원** 김건희 여사 건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신장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신장식 위원** 다시 표로 돌아갑시다. 다시 큰 표로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대검 이첩 처분 결정 전에 해임됐어요. 이것도 수사 중인 사건이었고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두 번째에 있지요? 대검 이첩, 이것도 수사 중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유시춘 EBS 이사장 대검 이첩, 압수

수색까지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수사 중인 사건인데, 똑같이 수사 중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권익위가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어떤 사건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디올백 사건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첩을 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권익위원회가 공정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실조사 여부……

다시 보시면 현장조사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쭉 보세요. 남영진 현장조사, 김혜경 경기도공무원 조사, 정민영 현장조사, 권태선 현장조사, 유시춘 참고인 진술 청취, 다 현장조사했어요. 그런데 왜 조사 하나도 안 합니까, 디올백 관련해서는? 이러니까 용산 하수인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1%만을 위한 권익위라는 얘기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하신 얘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표를 보면 아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일이 다,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이 표 만든 겁니다. 거짓 말로 만든 게 있으면 변명해 보세요. 제 말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으면 변명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가방 사건,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아까 일부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회의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 청문회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민국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저쪽으로 좀 서 주시지요.

아까 잠깐 질의가 나왔다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헬기 이송 관련해 갖고요 병원과 소방관들이 규정을 위반해서 이권 개입하고 알선·청탁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고 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부산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그리고 소방청에 전원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도 마찬가지로 헬기와 관련돼서 요청받았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정 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소방청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현정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방청과 병원에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제출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김현정 위원 그것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부위원장님, 만약에 이런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매뉴얼이 있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전원위원회에서 그 매뉴얼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 지금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없으면, 매뉴얼이 그 사실과 다르면 지금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라든지 소방청은 내부에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것 분명히 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 디올 백 뜯어 보고 다시 돌려주라고 한 것 아시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김현정 위원** 그것 왜 돌려주라고 했을까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위원** 둘 중의 하나겠지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받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돌려주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위원** 이것도 다 판단이 안 서요? 둘 중의 하나잖아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것을 받으면 위법하다, 즉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여서 돌려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아까 조사 안 하셨다 그랬지요? 그냥 해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직무 관련성은 각자 위원들의 판단의 몫이었습니다.

○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는 최재영 목사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황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엣것 다 생략하고 그냥 해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판단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고, 그래서 배우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그 판단 잘못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 판단 잘못하면 재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재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언론에서 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 **김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다시 재결의해야 되는 것 맞지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런 가정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가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가정해서 답을 하세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가정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그리고 앞에서 몇몇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의결서에 보면 예비적 판단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국가기록물에 해당돼서 신고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맞습니까, 권익위의 판단이 맞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면 국고횡령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돌려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익위에서는? 그것 돌려줘 가지고 국고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거기 출석해 가지고 ‘국고횡령죄 맞습니다’라고 증언할 용의 있으세요?

도대체가 오늘 하루 종일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스스로도 대답하면서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김현정 위원** 제가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건 위원들의 각자의 판단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든지 모든 것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정 위원** 아니 하다 못해, 위원장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재판을 할 때도 뭐를 판결을 하기 전에는 사실관계부터 확정하고 증거 조사하고 그다음에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 절차는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그렇게 자꾸 그냥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설득이 됩니까. 정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10일 자에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의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돼서 신고의무가 없다’,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부동산을 받든 무기명 채권을 받든 간에 신고의무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묻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법령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위원** 제가 이 의결서에 보니까요 25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판단한 근거를 갖다가 적시해 놨는데 현재 판결을 인용했어요. 2015헌마236 사건, 여기에서 공직자의 불신고처벌 조항에 대해서 9명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큼 가별성에 논란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위원** 맞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 **김현정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건 합헌입니다.

○ **김현정 위원** 합헌이잖아요. 5명은 합헌이라고 그래서 합헌인데 그 4명의 소수의견을 가져다 근거로 지금 이 근거를 댄 거예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권익위에서 굳이 현재의 소수의견까지 가져다 쓰면서 스스로 결정한 이 건에 대해서…… 권익위는 왜 그러면 의결서에 소수의견은 공개 안 하고 회의록에만 남긴 겁니까? 이것을 판단할 때는 현재 소수의견을 가져다 쓰셨잖아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부분은 불소추특권과 관련된 내용을 쓴 것이었고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 **김현정 위원** 이것 보세요. 정말 권익위의 이런 행태에 그리고 기준도 잣대도 없는 이런 누더기 변명, 이런 누더기 해명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현정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들을 저희 여야 위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뒤의 공무원들도 듣고 계세요. 이것 청문회 해야 됩니다. 청문회 할 이유를 지금 스스로 확인시키고 있어요.

---

○ **위원장 윤한홍** 김현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잠깐 위원장님, 소방헬기 관련 규정 이야기를 하시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 **위원장 윤한홍** 예, 말씀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판단한 소방헬기 관련 규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지침과 매뉴얼과 규정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 내용이요 이런 것 아닙니까. 부산대에서 소방청에다가……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시고요, 잠깐……

우리가 회의를 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장님,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통계표에 너무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저희 사건의 처리기간이 90일 넘는 사건이 1%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공의침해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이고요. 이 사건과 같이 부패신고 처리 현황은 최근 5년간 통계가 90일 넘는 사건이 44.5%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통계는 공의침해 신고 사건이고 이와 같은 부패 신고 처리 현황은 최근 5년간 통계가 평균 90일이 44.5%였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까봐 잠깐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유철환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청와대의 금고가 열리면 문재인 권력의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난다’,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건에 대해서 명백한 범령위반 근거를 들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첫 번째가 도종환 문체부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 방문에 동승한 김정숙 여사가 탄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을 사용한 것, 그다음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옷은 명백한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어야 할 의상이지만 개인적으로 블라우스로 개조해서 개인 착장을 한 사례, 그다음 김 여사의 의상비 출처가 청와대 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의혹이 있는데 명장 의류를 구입하면서 의상비 전액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에서 신권으로 발권한 관봉권으로 지급됐다는 것, 이것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서울 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불복하고 항소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명백한 법령위반인데 이것 당연히 청문회 대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이 건은 권익위 판단은 어때요? 대통령 기록물이 오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권익위원장께서는 대통령기록물 보관에 대한 명백한 의무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은 맞는데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는 사실 저희가 판단 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좋습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김 여사가 의상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김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었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양인애, 프랑스 이름으로 양이네스, 양인애를 청와대 6급 행정관으로 채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양인애 씨가 프랑스 국적자입니다. 한국·프랑스 복수국적자가 아니에요. 외국 국적자를 공직자로 채용할 때는, 특히 청와대의 보안 유지 등등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이 채용 과정은 심사 절차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이렇다 한 절차 없이 채용을 했습니다.

특히 양인애 씨는 6급 행정관 재직 시에 공직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아버지의 패션사업 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 왔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묵인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원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말씀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도 아직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오늘 제가 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다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오전·오후 전부 권익위의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일을 예외 없이 다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정무위 같으면 민생 문제를 짚어야 될 사안이 많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에 매여 있어요. 이게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 화제를 좀 돌려서 공정위원장님, 지금 청년들 결혼인플레이션 아세요? 결혼, 웨딩플레이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예식장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결혼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에 4347만 원, 23년도에는 5449만 원, 약 25%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하지 않고 있는 남녀 청춘세대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결

흔 의향이 없는 사유의 80.8%가 ‘결혼식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비용 중에도 청년층들은 주택자금 외 결혼자금이 79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웨딩과 관련된 웨딩플래너, 웨딩 예약 대행업체 등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청춘남녀들이 결혼할 때 전부 결혼 준비 예약 대행업체를 안 끼고 결혼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계약관계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결혼 준비 예약 대행업체들을 고용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위약 사례가 발생하면 위약 청구금이 너무 과다하다.

한 사례로 이런 업체에 333만 원 플러스 추가금을 지급했는데 당사자들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 자체가 취소됐어요. 333만 원 중에 11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 이것 위약금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이런 결혼 준비 예약 대행업체들이 요구하는 추가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스드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근거조차도 결혼 당사자들이 알 수가 없고 또 추가금도 정보공개 자체가 사실상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에요—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공정위에서는 25년도 정도까지 해서 한번 조치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 그러면 안 되고 즉각적이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염두에 두시고 좀 조치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최대한 앞당기고 일부 대책을 추가해서 다음 29일 날 저희가 기자간담회 그리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정승윤 부위원장 먼저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저쪽으로 가세요.

○**천준호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계시고요.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님께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쟁화하는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쟁화하면 혐오가 양산이 되고요 또 다른 정치

테러 사건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 엄단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와 답변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께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약간 혼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승윤 부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사실, 서울대병원 치료받은 사실을 특혜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절차를 위반한 것을 특혜로 볼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 지침 그리고 헬기 출동지침 이런 것들이 행동강령 위반이다, 지침 위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천준호 위원** 어쨌든 헬기 이용 사실, 서울대병원 치료 사실은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렇지요. 이용하신……

○**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님, 그렇다면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저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부산대병원은 권한이 없는 의사,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전화를 해서 헬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권 개입이고 알선·청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데 권한이 없는 의사,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그러니까 당번의사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해서 헬기를 요청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건 무권한 자의, 공직자에 대한……

○**천준호 위원** 아니,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무권한 자의 행위는 당연히 위법입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어디에 그런 근거규정이 있느냐고요. 법령이나 조문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셔야지요,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위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공직자가 소방청에 헬기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할 때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방청에 당연히 하는 것은……

○**천준호 위원** 아니지요. 응급실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요청하는 것은 다 권

한이 있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게 사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천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안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을 하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기……

○**천준호 위원** 아니,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냥 주관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규정들 다……

○**천준호 위원** 어떤 규정이 있었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부산대학교……

○**천준호 위원** 사무처장님이시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러면 권익위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걸 점검하셨을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어느 규정이 있느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부산대에도 전원 규정이 있고 서울대학교에도 전원 규정이 있고 다만 국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지만 안에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제가 여쭤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천준호 위원** 권한이 없는 의사가 전화를 해서,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전화를 해서 헬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천준호 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권 개입이고 알선·청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출동 요청 자격과 관련해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2016년 1월에 발표된 3차 개정안을 보시면 출동 요청 자격과 관련해서 ‘출동 요청은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

○**천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해당 병원의 의사가 전화로 헬기 전원 요청을 한 거라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를 상담, 진료, 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상담, 진료,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천준호 위원** 2016년, 똑같은 규정인데요, 응급의료센터의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동 요청 및 접수 및 출동, ‘출동 요청자로부터 출동 요청 접수 및 출동 필요성을 결정한다. 부득이 이석하게 된 경우 이석하는 동안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의 응급실은 바쁘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잖아요. 한 사람한테만 이걸 네가 꼭 전화해야 한다고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권익위는 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권 개입이고 앞선·청탁이라고 해석을 한 게, 이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인지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은 더 웃깁니다. 소방본부가 전화…… 규정 위반이라고 한 근거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어저께 언론 브리핑에서, 전화가 권한이 있는 의사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를 출동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병원에서 의사가 헬기를 보내 달라고 소방청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응급상황에서 ‘당신이 권한이 있는 의사가 맞습니까?’라고 거기에도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헬기를 보내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특혜 제공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여기, 방금 전체 보내 드렸습니다.

○천준호 위원 소방방재청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와 관련된 규정은 자기네도 찾을 수가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소방방재청장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브리핑하기를 우리는 매뉴얼대로 헬기를 출동시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소방방재청장도 직접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소방방재청장님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적 있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밑의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판단의 근거규정이 무엇이었는지, 법령과 규정 몇 조를 위반한 건지 얘기를 해 달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19……

○천준호 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119……

○천준호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권한 있는 의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소방방재청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응급출동을 하는데 출동한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 의사이십니까, 주치의십니까, 환자를 돌봤습니까, 환자 상황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헬기를 출동시킨다는 게 그 응급상태에서 맞습니까, 그게?

저는 이런 판단을 한 국민권익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을 정말 경쟁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천준호 위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물타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혐오를 만들고 또 다른 테러를 양산시키는 일을 지금 국민권익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큰 죄를 짓고 계신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마지막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예, 답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것과 관련된 규정과 내용을 따진 것이지 최초에 테러를 당해 가지고 부산대학교까지……

○천준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지금 제가 다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소방청의 119구급과에서 나온 자료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자료 드리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보건복지부……

○천준호 위원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다 드렸습니다.

○천준호 위원 어떤, 몇 조 몇 항에 위반이 되는지를 그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걸 제시 못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아까 그 조문을 읽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위원장 윤한홍 몇 조 몇 항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지침 목차에 보시면 ‘나. 출동의 요청과 결정’에서 1목에 출동의 요청, 출동 요청의 자격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것을……

○천준호 위원 아니, 거기에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니까요. 말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용과 근거를 제시 못 하시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죄송합니다. 저희 다수의견은 그렇게 판단을, 거기에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다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부위원장님, 그쪽에서……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박상혁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이 보시기에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국회에 왜 업무보고를 하고 여기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질문을 하고 있지요, 권익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국민의 대표니까 당연히 질문을 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질문을 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뭘 견제하고 관리감독하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행정권을 관리감독하고…… 아니다,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서.

○**박상혁 위원**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권익위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어보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답변을 안 합니까? 자료제출 요구 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답변 안 했지요?

국민권익위가 얘기하고 있는 비밀 유지·엄수 의무는 그것이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수사기관에 유출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하나의 절차의 정당성이라든지 판단에 정확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저희들이 판단을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거기에 기초자료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안 주시냐는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물어보신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방문진 이사장이었던 권태선씨나 정민영 방심위원 이런 분들 처리기간이 보통 며칠이셨어요?

아까 PPT도 있던데, 보통 10일에서 20일, 30일 내였지요. 정민영 방심위원 아까도 보여 주셨지만 처리기간 10일이었지요. 현장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김건희 여사 사건 116일이었어요. 현장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조사를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뭘 최선을 다해 조사해요!

○**강명구 위원** 살살 좀 합시다!

○**박상혁 위원** 지금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럿이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유동수 위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강명구 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유동수 위원** 나가시면 될 것 아니야.

○**강명구 위원** 큰소리 좀 치지 말고 하세요.

○**유동수 위원** 나가면 될 것 아니야.

○**강명구 위원** 예의를 좀 갖추세요.

○**박상혁 위원** 회의록, 아까 보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이 사실관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오늘 아무 자료가 없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이 사람이 잘못 착오한 거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착오를 한 건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를.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구한 자료가 뭡니까?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사무처에 제출된 자료 일체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착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인지…… 왜 안 내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위원님, 저희가 15명이나 위원이 있습니다.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박상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회의록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먼저 제재권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답을 맞춰 놓습니다. 이 회의록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종결할 거냐, 송부할 거냐, 이첩할 거냐 결론을 맞춰 놓고 거기에 따라서 논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의결서에 보면 또 예비적으로 가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맞춰서 모든 구성을 해 놨습니다. 저도 변호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그래서 먼저 사실조사가 정확히 됐는지 여부를 많은 위원들이 물어봤지만, 사실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예처럼 10일인 사건도 현장조사를 하는데 116일 되는 사건도 현장조사 한 번 없이, 이 상태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이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사실조사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의결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의결서 22페이지에 보면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당연히 부족하지요. 현장 조사도 제대로 안 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고 신청인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최재영 씨 같은 사람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면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한테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제대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그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료를 안 내실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원회라고 칭하는지, 명품백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옛 300만 원어치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이 희한한 장면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범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상혁 위원** 여기에 보면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셨지요? 그런데 왜 테러방지위원회가 있는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총리한테 물어봤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물어봤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일단은……

○**박상혁 위원** 아직도 부족합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한 가지 말씀……

○**박상혁 위원** 그럴 정도로 부족합니까, 이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테러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건 하부 기관이잖아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하부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테러에 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테러센터에서 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고 현재 그것은 국가정보원장의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테러방지법에 보시면 국가 등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한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테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의 정의에 맞게 판결이 나온 경우에 테러라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판단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혁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판결이 왜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판결로 구속됩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혁 위원** 아니, 그러면 많은 행정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은 사법부의 판단이 되지 않으면 판단 못 해요? 권익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것이 결국 행정부에 관한 것과 사법부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박상혁 위원** 다르지요. 여기서 말하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것이 연계될 경우에는 사실 수사나 조사나 그다음에 재판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가 먼저 판단을 하지는 않지요.

○**박상혁 위원** 저는 이런 태도들이 그 이후에 있었던 배현진 의원의 사건이라든지……

○**위원장 윤한홍** 자,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님!

○**박상혁 위원** 불행한 사건을 양산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한홍** 박상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 대통령께서도 정치 테러라고 얘기했고 한 사건에 대해서 왜 정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요.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1분만.

○**신장식 위원** 유철환 위원장님, 아까 제가 1%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44.5%다, 90일 넘어간 거'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신장식 위원** 5월 29일 자 한겨례신문에 보면 김두관 의원실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1년 동안 부패 사건 90일 넘긴 것은 1%에 불과하다. 전체 6853건 중 8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권익위가 제출한 부패 사건 처리 비율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이걸 다 일일이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실로 5년간 연도별로 공익침해 사건, 부패신고 처리기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 자료 드리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마치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윤한홍** 아니,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한 거니까 그럴 수 있고요. 자료 드리세요.

○**신장식 위원** 김두관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기사가 100% 맞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신장식 위원**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라고 나와 있다고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권익위에서 자료제출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정승윤 부위원장, 저쪽에 좀 잠깐 서 보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응급 닉터헬기 이송 문제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야 되고 예상을 했으면 국민권익위원장과 또 사무처를 대표하는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위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결정의 근거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권익위원장부터.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의응답 과정이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법 규정을 다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법 규정을 몰라요. 그러면 그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된다, 이걸 소상하게 얘기해야 국민들이 바라보고 이해를 할 텐데

전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오늘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부를—정부는 아니지요, 권익위가—대표해서 나온 건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답변을 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나 범죄자가 아니에요. 위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추궁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위원장한테 허가를 얻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그래야 여러분들 결정의 정당성이 국민들한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권성동 위원** 이 사건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몇 명입니까, 전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전원위원회가 한 명 사퇴해서 14명입니다.

○**권성동 위원** 14명이 다수결로 결정을 했습니까, 전원 일치로 결정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14명 중에 2명이 중도 사퇴해 가지고 12명이 다수결로 처리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다수결로 처리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기관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정부로부터 직무상 영향을 안 받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각 위원들이 독립해서 결정하지요, 자신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신분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사건은 누가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여러 분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 여러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한 일곱 분이……

○**권성동 위원** 왜 신고를 했냐면 그 당시부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별씨. 그 당시 부산 대병원에서 수술을 안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닥터헬기를 타고 전원해서 수술을 받으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는 자, 지킬 것을 강요받는 국민 따로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부산시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당연히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가 입법을 추진한 지역의사제, 지방 공공의대 설립 이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이 사건 하나로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했을 겁니다.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이재명 대표, 정청래·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의사사회에서는 이 응급 닥터헬기를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고.

그런데 결과는 국회의원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공무원 행동강령의 그런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특혜를 받았는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인데 특혜를 준 사람만 징계를 해야 되는 이런 끌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나온 언론에 보면 부산대병원 교수는 해당 사건은 이재명의 서울대병원 헬기로 인한 사건인데 정작 이재명 전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비켜 간 건 기막힐 노릇이다. 권력자의 청탁을 막고자 하는 게 김영란법 취지 아니냐. 천 모 의원이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이 대표의 전원을 부탁한 건 국회의원이 공익적이지 않은 사유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사례다.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비판을 했고.

일반 국민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개인적인 전화통화만으로 환자를 전원했는데 환자와 보호자 측이 아닌 의사와 소방대원이 책임을 지게 하는 건 권익위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힘 있는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의사와 소방대원을 징계 할 거면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전 비서실장에게도 똑같은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출동 과정에서 진료를 한 의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진료와 관계 없는 사람이 요청해 가지고 됐다고 해 가지고 징계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적 여론은 ‘국회의원도 공직자로서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국민적 여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사 결과 이렇게 됐으면 입법 청원을 하든가 입법 요청을 해야지요. 국회의원도 여기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논의는 안 해 봤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전원위에서 그것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신고가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규정 위반으로 징계 통보는 하긴 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 특혜를 받은 사람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이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선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30초만……

**○위원장 윤한홍** 우리 박상혁 위원.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저에 대한 신상과 관련해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박상혁 위원님 30초 하세요.

○**박상혁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아까……

○**권성동 위원** 무슨 모욕적인 발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나와 있는 대로.

○**천준호 위원** 뭘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특혜를 요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권성동 위원** 성명서를 그대로 읽어 준 거예요.

○**천준호 위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위원장 윤한홍** 잠깐……

○**이강일 위원** 서로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디스를 그렇게 막 대놓고 하시는데 좀 문제 심각해질 것 같아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조금 전에 테러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상혁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그걸 지정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관계 규정과 법령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이시기 때문에 심의 의결할 권한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규정을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한번 여쭤……

○**천준호 위원** 아니, 저 신상발언 달라니까요, 위원장님. 이렇게 넘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강일 위원** 본인 얘기가 나왔는데 신상발언 주셔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시간 멈추세요.

○**천준호 위원** 아니, 노골적으로 저에 대해서 제가 특혜를 요구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거 없이.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이강일 위원** 이름이 거명됐는데 신상발언 왜 안 줘요, 줘야지.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정확하게……

(「뭔 신상발언이야」 하는 위원 있음)

○**천준호 위원** 뭀 신상발언이냐고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요 언론 보도를 읽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이강일 위원** 언론 보도 읽는 걸 핑계로 대면 앞으로 그럴 일 너무 많아요.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제 말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익위에서 닥터헬기 사건은 천준호 위원님이 직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사실 본인이 스스로 제척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우리가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이강일 위원 안 드렸는데 오늘 다 나왔네, 뭐.

○위원장 윤한홍 아니,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권익위에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발언 시간 되면 하십시오.

○이강일 위원 남의 말을 빌려서 동료 위원 디스하기 시작하면 여기 자유로운 사람 채선 이상급이 거의 없어요.

○천준호 위원 더더욱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신상발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우리 천준호 위원님이 직접 관련된 겁니다, 그게.

1분만 드리세요.

○천준호 위원 아니, 지금 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저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특혜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특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할 때 좀 들어 주십시오.

신상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자꾸 정치인의 혐오가 증가되고……

○위원장 윤한홍 1분 다시 드리세요.

○천준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면 정치 테러를 더 조장하는 꼴이 자꾸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하세요.

○천준호 위원 여기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위원장 윤한홍 1분 드렸습니다. 그거 하세요.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유동수 위원님 7분 드리시고, 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의결서 작성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의결서 작성은 보통 주심 위원이나 또는 주무 위원이 주로 작성할 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유동수 위원 회의를 하고 좀 다른 의견들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유동수 위원 그런 의견들이 다 이 의결서에 포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동안 저희 의결서에는……

위원님, 혹시 소수의견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유동수 위원 예, 어쨌든 다른 의견들을……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다른 의견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보느냐면 사안별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서 어떤 분은 소수의견을 냈고 어떤 분은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기록물에 관련해서 이건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안별로, 쟁점별로 기록되는 게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의결서가 어떤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다수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수 위원 다수의견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소수의견들도 본인들은 때로는 굉장히 용기를 내고 때로는 굉장히 합리성을 갖고 또 때로는 합법성을 갖고 주장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유동수 위원 저도 회의체에 많이 들어가 보지만 반대의견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결서에 전혀 녹아 있지 않으니까 이 의결서가 법원의 판결문에 비해서 너무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결서 작성 방법을 이렇게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들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과거에는 어쨌든 행정위원회의 결정문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낸 그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은 소수의견을 당연히 기재합니다마는.

○유동수 위원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판사로 계셨으니까.

저는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을 낸 판사님들의 어떤 때, 어떤 조문들을 보면 굉장히 뛸듯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결서이지 않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왜, 앞으로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앞으로도 그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행정위원회의 어떤 한계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유동수 위원 어쨌든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의결서를 보고 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서로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의

결서 25쪽에 보면 ‘9명 중에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것 가별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견강부회하는 거지요, 지금 논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실제로는 합헌이었고 그다음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리한다고 밝힌 부분은 안 쓰고 ‘공식적 판단은 합헌이고 앞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공직자 배우자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판결문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읽어 보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만 읽어 보면 그냥 가별성이 논란이 있었다 이 부분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은 지금 이게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도 다수의견에 동의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어떤 논리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어쨌든 저희 신고된 사건의 자료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동수 위원** 아니, 논리를 여쭤봅니다. 법 논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판사 출신이니까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뇌물죄 관련한 직무 관련성과 청탁금지법상에 나오는 직무 관련성이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가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동수 위원**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다수의견을……

○**유동수 위원** 다수의견 말고요. 지금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지금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서 굉장히 총괄적이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인 만큼 포괄적 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뇌물죄에서 다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뇌물죄에서 생각하는 직무 관련성과 청탁금지법상의 직무 관련성이 어떤 점에서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뭘 원용해서 쓴 겁니까, 논리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의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게 직무랑 관련성이 없다고 저한테,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위 선물 제공자라고 하는 분이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이재명 전 대표의 하루에 두 차례 응급헬기 이송 논란 조사 관련해 가지고 결과를 내놨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보면 분명히 ‘정작 헬기 탄 건 이재명인데…… 특혜 맞다. 공무원만 처벌 받는다’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덕도 현장에게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과정이 아니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교수가 기자를 만나서 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의학적 측면에서는 외부 이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결정했는데 헬기로 이동하기 위험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장 상처를 치료하는 응급수술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종 이송 결정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원 과정을 보면 교수가 브리핑에서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 중이던 이 대표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다. 그때 내가 환자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 의사들은 서울대병원 이송을 반대했다 그립니다. ‘우리가 하자’라고 했답니다. 담당 교수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이송 중 위급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송을 했는데……

위원장님, 오늘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성명서 낸 것을 보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저는 그것은 정작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의사들이 처벌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 재의 요구를 하면 다시 조사할 권한이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

○**李憲昇 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대한응급의학회의 주장이 일면 공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못 보셨다 그러니까, 학회에서 낸 의견이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리고 응급센터가 서울, 부산에 있는데……

서울대학교에는 그런 과가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응급의학과만 있어 가지고 응급과에서 치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李憲昇 위원**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국무조정실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李憲昇 위원** 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도 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주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李憲昇 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하기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4개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서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가지고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이나 확정해야 되는데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계획 변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부서와 부서 간의 칸막이 이런 것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국회에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 판단은, 저도 사실 소상하게 보고를 받진 못했습니다마는 기재부 판단에서는 이 사업을 할 준비가 완료되면 배정을 풀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동안 행안부는 연초에 발전종합계획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변경계획안을 작성해서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조차도 부서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고 예산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월 달입니다. 국회에서 필요에 따라 그 당시 기재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피해는 결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가 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알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과거에 미군이 사용하던 DRMO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제가 초선 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이 오염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환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철도공사 그다음에 국방부, 외무부 다 관계되는 부서인데 서로 서로 책임을 떠밀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됐는데 결국은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나선 결과 일단 치유를 정부 측에서 하기로 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반환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나서셔 가지고 행안부와 기재부 서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준 사용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왔다와 갔다가 뭐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죄송합니다. 제가 언론 보도만 주로……

○**이강일 위원** 보세요.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통일TV 송신 재개에 대한 청탁 건이었다. 두 번째,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권과 국립묘지 안장 건에 대한 청탁입니다. 두 가지 다 청탁 건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도……

○**이강일 위원** 두 가지, 왔다 갔다가 있어요. 왔다도 청탁 건이고 갔다도 청탁 건이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제가 왔다 갔다로 표현한 것은 그분이 직무 관련성 없었다는 진술을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일 위원** 좋아요.

소수의견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소수의견 좀 얘기해 볼 테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세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 같은 경우 대부분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다. 국가라는 게 국격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받아야 한다’, 이어서 ‘이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같은 경우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히 이루어졌고 전달 장소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다. 따라서 이 건은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한 장소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인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공적인 만남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서 합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자체만 갖고 뇌물성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뇌물이라고 규정, 이어서 합정수사와 뇌물공여를 시험 삼아 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다’면서 ‘뇌물공여의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을 남겨 놓는 것’이라면서 ‘뇌물공여자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소수의견을 그렇게 발표하신 건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A 위원은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서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수사 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 맞을 겁니다.

또 한 위원, ‘신고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정확하게 법률적 판단으로 맞다 틀렸다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어느 법을 적용해서 이걸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권익위가 지나치게 법리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이강일 위원** '권익위가 대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외관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또 한 위원, '국민적 관심사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재심 사유에 없어서 종결하는 것은 임의적·재량적 규정인데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사항을 단순히 종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지적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런 말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제가 회의록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강일 위원** 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판결할 때 권익위 전원위원이 몇 명이었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때는 열다섯 분이었던 걸로……

○**이강일 위원** 15명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열다섯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이 15명 중의 몇 명입니까? 13명이에요.

유철환 위원장님,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맞으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대선캠프와 대통령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정승윤 부위원장,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했던 박종민 부위원장, 판사 출신으로서 지난 윤 대통령 선거 때 지지 모임에서 토론회에 참가해서 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김태규 부위원장 포함해서 무려 13명입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자 몇 명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여섯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강일 위원** 반대의견 제시한 소수의견자가 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인가 한번 보실까요? 15명 중의 6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어쨌든 법률상으로 다수의견 아니면 그다음에 소수의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국회의원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이강일 위원** 국민의힘 몇 명입니까? 108명입니다. 몇 프로예요? 36%예요.

15명 중의 6명은 40%예요. 무시할 수 있는 소수의견인가요?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해야 될 소수 인원 아닙니까? 40%를 민주적인 국가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견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냥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다수의견 아니면 나머지 소수의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여기 동료 위원들도 그러는데 다수결로 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강일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PPT 자료 좀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못한다고 해서 안 한 거지요?

PPT 자료 저거 너무 작은데 보일지 모르겠네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일 위원** 구체적인 사실관계 아까 아래서 조사 권한 없느니 뭐니 해서 못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국민권익위에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이러이러한 선물을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하면서 돈 300만 원짜리 명품 지갑 선물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거 귀 기관에서 답변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런데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이강일 위원** 아니, 관여를 안 했어도 저게 그 기관에서 답변한 자료예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반적으로 답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 없다고 단정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유감 한 말씀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언론브리핑 자리입니까? 기사나 줄줄이 읽어 가면서 동료 위원 이름 막 실명 거론하면서 여기서 디스하는데 앞으로 상임위 아래도 되는 겁니까? 상임위가 동료 위원 실명 거론하는..... 저 지금 사실은 대통령 이름이나 김건희 여사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거나 하는 것 빼고서 다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혹, 남의 기사 같은 것 읽어 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 위원 디스하는 것 지금 막지 않으시면 여기 초선 아니신 분들 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왜 그걸 갖다 막지 않으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한홍** 계속하세요. 계속 떠들어 보세요.

○**이강일 위원** 동료 위원 이름 거명하면서 그것도 비열하게 기사에 이름 난 것 읽어 가면서 하는 것은.....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잠깐만요.

○이강일 위원 하지 말아야지요, 서로.

○위원장 윤한홍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이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발언시간 되면 위원님들 마이크가 켜집니다. 큰소리 안 치셔도, 우리 집행부가 안 그래도 긴장하고 앉아 있어요. 큰소리 안 치셔도 되고요.

○이강일 위원 저한테 기회 올 때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거론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 권익위의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천준호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이게 잘하면 이해충돌이나 제척사항도 될 수 있지만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당사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기사가 나와서 나온 거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조승래 위원 권익위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 것 아니에요, 권익위도.

○위원장 윤한홍 아니, 왜냐하면 권익위에 이게 신고돼서 조사를 한 사건인데……

○조승래 위원 아니, 그렇게 김건희 여사 건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천준호 위원 건은 존중 못 합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지요. 주제를 또 왜 바꾸시나요?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강일 위원 저도 여기서 계속 그러면 대통령 이름하고 영부인 이름 다 거론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하세요. 지금 했지 않습니까. 해 놓고 왜 안 한 것처럼 하세요, 하루 종일 했는데. 하루 종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강일 위원 제가 거의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거의 이름 얘기 안 했다고.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천준호 위원님께서 권익위의 헬기 사건의 당사자기 때문에 기사가, 이름이 나온 건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

○李憲昇 위원 잠깐만요.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나도 이야기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세요. 그러면 이현승 위원님 1분만 하세요.

○李憲昇 위원 이강일 위원님, 내 실명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이 자리에서 특히 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 이름은 거론 안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무의식 중에 이름을 거론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비서실장이라는 그것만 했지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동수 위원 아까 권성동 위원님이 말씀……

○이강일 위원 얘기하고 그냥 이석해 버리셨어요.

○李憲昇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감안을 하고.

또 우리가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을 우리가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취재할 수도 없는 거고 직접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언론 내용, 보도를 읽었다고 해서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언론 인용된 걸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제 옆에 계시는 분도 아까 ‘다른 언론이’ 하면서 어느 신문 이렇게 인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없는 사실을 제가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강일 위원** 그러면 이름 얘기 안 하면 누구인지 몰라요?

○**위원장 윤한홍** 자, 그만하시고……

○**李憲昇 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사실은 그동안도 해 보면 위원님들 이름 거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그만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릴 것은 발언하실 때 마이크 켜지기 때문에 큰소리 안 해도 됩니다. 집행부가 안 그래도 긴장해서 앉아 있는데 큰소리 하시지 말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민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이쪽으로 위치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강정애 보훈부장관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잠시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자료 혹시 보이십니까, 글씨?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지금 현재 스크린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송현숙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의 녹취록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여기 보시면 최재영 목사님이 김창준 의원 관련된 청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실의 조연경, 유 비서님을 통해 가지고 송현숙 사무관한테 오는데 그 사무관한테 오기 전에 파견된 국가보훈부 직원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오지요.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 내용 녹취된 것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김창준 의원과 관련된 문의가 와서, 평상시에 저희 국가보훈부에는 안장과 관련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것에 따라서 항상 답을 하는데 이 사건도 그렇게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이런 청탁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를 통하고 다시 파견된 공무원을 통하고 국가보훈부의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고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통상적인 절차하고 이걸 동일 선상에서 놓고 있는데……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지요?

○**한창민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니까 특이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비쳐지긴 하지만……

○한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희는……

○한창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승윤 부위원장!

제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전의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틀어 주시지요.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이게 원본 영상을 저희들이 입수한 건데요. 명확하게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은 틀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만 삭제된 내용이고요.

다음 보여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이고요. 바로 옆에가 영수증 정확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은 명품 화장품과 영수증입니다. 정확하게 152만 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건 명품 향수와 영수증입니다. 28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 이것은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된 고급 술입니다. 이번에 검찰수사에서 이것 관련된 것은 위해요소가 있어 가지고 버렸다고 이런 변명을 했지요.

이러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한테 왜 줬을까요? 두 분이 애인 사이도 아니고 오랜 지인 사이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깊었던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승윤 부위원장님, 직무와 관련돼 있거나 청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줄곧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탁의 이유도 없이 저런 고가의 선물들을 계속 주고받는 관계인가요, 둘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창민 위원 시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나 법적 판단으로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이 사건은 통상의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한창민 위원 통상의 사건이 아니라 매우 위중한 사건이지요, 대통령 배우자가 걸려 있으니까. 더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리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특이한 게 아니고 청탁, 선물을 주고 거기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게 또 선거 즈음에서 공개되고 그런 상황이 정말로 특이한……

○한창민 위원 음모론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실관계 중심으로 얘기하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창민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계속 종결 처리하면서도 그렇고 말씀

하시는 데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간 청탁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김창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하고 국정자문위원 위촉 청탁이고요 그다음에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책임과 역할로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돼야지 이런 것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일반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직무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해석으로 인해서 처벌 규정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하지요? 일반 범조인들이나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금 계속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런, 청탁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 부분은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이 선물이 청탁하고 연관이 없다는 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모든 관계성을 다 들여다보더라도 이것은 청탁성 뇌물 아니면 알선수재하고 연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소수의견처럼 다른 특가법으로라도 당연히 이것은 이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그 꼬리 잘라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요. 지금 이 장면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열불이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범인카드 유용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다양한 분들을 조사했고요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건 한번 보시지요, 이진숙 후보 건. 저 정도 내용 심각하게 안 봅니까? 그러면 어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김혜경 여사하고 김석환 이사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어요, 수사기관에서. 그런데 권익위가 검찰에 다시 재수사 요청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한창민 위원 아니, 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신고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한창민 위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하면 매우 엄중한 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매우 특이한 사례잖아요, 이것도.

○위원장 윤한홍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특이하지 않습니다.

○한창민 위원 뭐가 안 특이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재수사 요구하는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7분이면 긴데 될 또……

○강훈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한홍 8분씩이나 하려고 그래, 7분도 긴데.

1분 드리세요.

○강훈식 위원 다행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은 상임위에 있는 분들한테 실명 거론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무위의 위상들을 서로 높여 나가고 위원들끼리 상처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기능에 입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울러 중인하고 참고인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만 해당 부처의 공무원을 배석시키는 문제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국정감사 기간이든 향후의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관의 장들은 이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사무관이 못 할 말들, 사무관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아서 다음번에 답변할 준비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권익위는 정신 승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정신 승리하면 영부인은 죄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은 죄가 있어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뒤에 계신 분들의 배우자도 받아도 됩니까?’ 이랬더니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맞지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이거 방송 다 보고, 200만 공무원들의 배우자가 되시는 분들이 다 명품백 300만 원 업무와 관련 없으면 받을 수 있다.

오늘 또 핵심적으로 한 논리가 뭡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 동생도 처벌 규정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 동생이나 제 아들이나 제 형님이나 제 사촌들이나 처벌 규정이 다 없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앞으로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저는 보고요. 그럴 때마다 정신 승리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선생님들이 카네이션 하나 받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제자들의 손 떨리는 카네이션 하나를 못 받았는지. 우리가 청탁금지법을

할 때, 김영란법을 할 때 왜 이 법의 취지를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과 권익위의 많은 분들은 속으로는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청탁금지법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조사는 없었고 기피도 없었고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기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논리적 방어만 합니다, 몇 가지 기준을 딱 세워서.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 조사하고 추적할 겁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조사한 적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기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들을 반복하는 권익위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하는 부위원장님 모셔 갖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요. 몇 가지만 자료 요청 겸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권익위 위원장님이 답변하세요.

권익위가 국회에서 토론회 같은 거 공동주최 자주 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자주는 안 했지만 한 적은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했다라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특별한 기준은 없고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훈식 위원** 10일 날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 했는데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 2021년 12월 이후에 처음 토론회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제가 취임 이후에는 처음인 건 맞고요.

○**강훈식 위원** 여기 자료집에 돼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익위는 검증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는 공동주최가 사실은 카리타스라고 천주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단체하고 해서……

○**강훈식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있는 장애인들 사진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해서 무단 게재해서 인권위에 진정돼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직 그걸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런 것 전혀 모르시는구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사진뿐만 아니라 장애인 퇴소동의서, 간이정신상태검사서, 의사소견서 5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개인 신상정보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불법 유출까지 지적되고 있고. 망신입니다, 권익위가 토론회 주최 한 번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만……

○**강훈식 위원** 아니, 이런 게 업무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장애인 고충 문제도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강훈식 위원** 이게 고충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충을 만들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이 됐다고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요, 위원님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아니, 지금 이 해당 사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아니, 지금 아무것도 공개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공개들은 막 하면서, 지금 여기 와 있고 부위원장이라는 분은 ‘무엇도 못 합니다, 무엇도 안 됩니다’ 하면서 이런 민간인들, 장애가 있는 분들을 공개를 막 해도 됩니까? 그래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해 본 바가 없어서 그건……

○**강훈식 위원**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예요. 그냥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그것을 방어적으로 하시려고 애를 쓰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아니, 잘못된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훈식 위원** 예?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잘못된 것도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하고 위원장님이 제 방에 와서 보고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국무조정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에 철저히 할 것’ 이렇게 한 줄 나왔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강훈식 위원** 그런데 제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립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및 점검·평가는 국조실 업무지요?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보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대통령의 호우 대비 메시지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하는 지시가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이 말한 한 줄만 딱 나가니까 이거 국민들이 지금 되게 비웃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닐 텐데 이 한 줄만 떨랑 나온 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냥 대통령이 한 줄 말씀하시면 한 줄만 나갑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시사항으로 관리된 건 아니고 그때 행안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강훈식 위원** 지시사항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지시사항이라고 한 줄 써 있는데 뭘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을 내려 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날 이번 호우와 관련해서 한 여섯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것 이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소상한 것까지 내렸는데 그날은 회의석상에서……

○**강훈식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걸 잘 관리하는 게 국무조정실 일이잖아요. 이렇게 한 줄이 나와서 국민들이 보고 허탈해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에서 지시사항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은 저희가 고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시하고 점검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아니,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거 한 줄 왔다고 한 줄만 옮겨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완하고 보강하고 부처별로 취합하고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공정위 위원장님, 아까 김재섭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 때문에 한 가지만……

배달의민족 이야기하던데요. 이거 대안이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이용료랑 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만드실 때 몇 개 기업들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하면 또 다른 방식들이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이미 배달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고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한 가지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예,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금 강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7월 8일자의 대통령 지시사항인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자관리 시스템에는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6월 18일 날 국무회의 때도 유사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무조정실의 전자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은, 잠깐만요.

○**강훈식 위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강훈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적의 포인트는 대통령 보좌를 잘하는 게 국무조정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했다, 언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포괄적으로 나와서…… 이 한 줄만 보고 느끼는 일선 공무원들의 허탈감이나 좌절감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앞으로 대비를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좋은 지적이지요. 총리실에서 앞으로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속개하기 전에 오늘 질의 내용이 거의 권익위에 집중이 되고 있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간사 간의 합의는 다 봤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원장님 다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귀가를 하시지요, 경인사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 이사장님하고 산하 연구기관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정승윤 부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지요.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유철환 권익위원장한테 질의했던 것 아마 뒤에서 들으셨을 텐데 사적 이해관계 여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조 6호를 읽어 드렸거든요.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일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에 회피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 법령상에 돼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자문 활동 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정책본부에 있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나 정책본부나 선거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가입된 그 기구가 사적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개인하고……

○이정문 위원 아니, 인수위가 아니라 대선캠프에 계셨잖아요, 대선캠프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단체에 속하면 그 단체와 관련돼서 사적 이해관계가 되지 그 안에 있는 대표라든지……

○이정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개인이라고 돼 있어요, 개인.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개인적으로 자문한 게 아닙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사원 또는 법제처에서 자문 받아 보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주무기관입니다. 저희가 최종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정문 위원** 셀프 판단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셀프 판단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감사원이나 법제처에서 정식적으로 자문, 이것 회신받아 볼 생각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최종 기관인데 감사원하고 법제처에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입니다.

○**이정문 위원** 아니, 그걸 스스로 판단합니까?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해야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주무부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종 판단하는 거고 이것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최종 유권해석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정문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내내 자료제출이라든지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대서 비공개를 하시고 계시지요, 답변을 하고 있지 않거나?

지금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또 이런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의결 과정, 자료 이런 것 제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는 자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더 나올 자료 이런 것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히 드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한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결국 김건희 여사, 배우자에 대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은 결국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런 걸로 결국 종결 처분을 하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참으로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6개월씩이나 질질 끌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결국 결정에 앞서서도 미리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연락을 주거나 했으면 됐을 텐데 또 공교롭게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 출국일에 앞서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것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출국하는 줄도 몰랐고 저희는 그것이 이미 한 달 전에 안전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무렵에 출국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안전이 한 달 전에 났으면 그 안전에 대한 내용을 그 전에 미리 충분하게 주지 왜 부랴부랴 그 전에 임박해서 나눠 줬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헬기 사건도 사실은 3일 전에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그런데 결국……

○**이정문 위원** 자꾸 헬기 사건 끌어들이지 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그게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향신문에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2시에 언론에서 이미 났습니다. 이 안건을 당일 안건 배부하거나 직전 안건 배부하는 것은,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원체 높은 사건들은 당일이나 그 직전 일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과거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스물몇 건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이고 예외적이고 특별하게 이 건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계속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도 이제 종결 처분이 났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위원들께서 여러 충분하게 의견을 소통을 하셨는데 이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낸 부분은 없었고요. 결국 끝 말미에 종결 처분, 이첩 처분, 송부 처분에 대한 다수결 결정만 있었는데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수가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한 적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마지막에 다수의견을 취합을 해서 원래 결정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수의견들에 따라서……

○**이정문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종결 처분이나 이첩이나 송부에 대한 다수의견만 있지 직무 관련성이 몇 명이고 또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분이 몇 명이라는 건 안 나오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전체 토론을……

○**이정문 위원** 그런데 이게 다수의견이라는 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하지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 다수의견을 내신 분들이 합의해서 그 결정문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

○**이정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종결 처분이 다수가 됐고 결국 종결 처분에 따라서 논리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설사 예비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이것은 외국인이 준 선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 구성한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회의 시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정문 위원** 회의록 제가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해당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최 목사와 관련돼 가지고 직무 관련성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그때 일부 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 중에……

○**이정문 위원** 산발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닙니다. 그리고 최초에 위원님들 중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지 이 사건이 그냥 논의 없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다수가 다 합의해서 작성된 의결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 의결서가 다수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 다시 재신고됐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조만간 결정도 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 위원회에서 그 규칙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티몬, 위메프 등 기본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마련, 오전에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잇따라 거래대금 지급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티몬은 감사보고서도 제출할 수 없는 상태로 사실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소비자와 판매자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발표한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들 서비스가 지불 불능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조속하게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관련인데요. 아파트 주민 관리비 부담 관련 질문입니다.

실장님, 아파트 사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강명구 위원** 아파트 관리비도 내실 건데요. 요즘 국민들께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계시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 부담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달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게 공동주택 관련 단체들이 반대가 심해서 시행령을 정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3000세대 이상이 되면 8월 18일부터,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2년 후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금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자연스레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아마 피해를 보실 텐데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시행령 정하면 과기부나 국토부나 다른 관계 단체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게 의견 수렴하는 단계가 있었나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금 시행령,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거쳐서 시행이 될 때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특히 새로운 규제나 그런 거 결될 때는 규제 심사도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거친 시행령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명구 위원 과기부나 국토부나 관련돼 있는 단체들 의견은요 지금 충분한 수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월패드나 홈네트워크 설비 갖춘 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옛날 아파트 이런 데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홈네트워크나 구축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데 선임한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여기 단체나 국민들께서 이 탁상행정에 대해서, 제가 아마 초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는 수수 금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제재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이첩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이첩 대상이 아니라면 종결 처리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불가능합니다.

○ **강명구 위원** 이번 사건은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없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제59조에서 정한 종결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맞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맞습니다.

○ **강명구 위원** 부위원장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배우자 관련 신고 사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가 한 6건인가 8건 정도 있는데 다 종결 처리했습니다.

○ **강명구 위원** 총 8건 접수됐네요. 공직자 배우자 관련 신고 사건은 총 8건이 접수됐는데 권익위는 8건 모두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명품백 사건만 특별하게 종결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권익위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이 사건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가 2명으로 보이는 것은 착시입니까? 진실은 명품백을 실제로 구입한 기자까지 총 3명인 것 같습니다. 모든 드라마 작품에는 연출한 감독이 있듯이 이 사건에도 이 모든 장면을 만들어 낸 사람이 있는 거지요.

○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명구 위원**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윤한홍** 재보충질의 안 합니까?

○ **강명구 위원** 예,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그러면 1분 드리세요.

○ **강명구 위원** 이 사건의 모든 장면을 만들어 낸 사람이 있는 거고, 그 기자가 없었으면 과연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당사자를 둘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청탁은 이 드라마의 각본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명품백은 이 드라마의 소품이고 각본과 소품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이자 몰래카메라입니다. 취재를 위해 몰래 연출된 청탁인 것입니다. 잘 짜여진 몰래 카메라 연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새롭게 더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저희는 제출된 자료가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 **강명구 위원** 사건 종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내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래 위원** 제가 질의 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말씀하세요.

○조승래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6월 9일 전원위원들에게 배포한 회의 안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 이 자료가 제출하기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좀 하게 해 달라, 그리고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달라 그거고, 두루뭉술하게 비밀유지의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사유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례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국세청 자료 같은 경우도 제출이 곤란해서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국세청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 경찰청 자료를 가서 열람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조사가 충실히 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논의의 참고자료로 사용된 거 아닙니까? 논의 과정에서 진행됐던 그 내용들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간사들께서는 이거 저희가 의결을 해서라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위원장 윤한홍 간사들 협의 좀 하도록 할게요.

○조승래 위원 그거 좀 시간 다시 넣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나중에 끝나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자료제출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갔으니까 계속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다시 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끝나고 넣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7분 다시 넣어 드리세요.

○조승래 위원 권익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쪽으로 나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나오세요.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그동안 권익위에 신고되고 또 종결된 사안이 8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조승래 위원 맞습니까.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 6월 19일 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어요.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중 공직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 신고 내역, 신고 접수 일시, 내용, 신고자 등 및 처리 결과’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거예요. 이게 7월 12일 날 온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공직자의 배우자를 피신고자로 한 부패 신고 건수는 2023년 1건으로,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 건이에요. 23년 12월 달에 신고가 됐으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저한테

회신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7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야당 위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기망하는 겁니까?

7월 12일 날 권익위에서 저희 의원실로 보낸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어느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8건이라는 얘기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위원님,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기 자료를 보시면 부패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하고 청탁금지법은 구분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조승래 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아니, 사건이 분리가 됩니다.

○**조승래 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을 이미 실무자들하고 다 협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거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권익위가 엄청나게 큰 조직이어서 지금 내부 칸막이가 너무 높게 쳐져 있어서 소통도 안 되는 그런 부서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권익위가 말 그대로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당초 설립 취지와는 정말로 관계없이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 버렸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익위원회는 과거와 같이 몇 개의 기관으로 오히려 더 쪼개는 것이 각기 맡은 역할을, 행정심판 업무든 고충처리 업무든 반부패 투명사회 업무든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오히려 다시 예전같이 분할하는 것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위 해체 법안을 저는 성안해서 제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보훈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건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조승래 위원** 예, 못 알아들으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여러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관점을 떠나서 장관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논란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논란이 있습니까? 논란을 만든 사람들이 문제지요. 어떻게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을 헛갈려 가지고 자꾸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까 헷갈리지요.

독립기념관장 계신가요?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예,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독립기념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학자적 양심과…… 독립기념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건립됐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게 헌법에 있는 내용이지요?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그렇지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왜 자꾸 1948년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자꾸 그렇게 한 30년 이상 후퇴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을 48년 정부 수립으로 본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의미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예.

○**조승래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역사적인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장관님, 보훈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국무위원 부처입니다. 독립운동, 6·25.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런 독립운동과 전쟁, 산업화·민주화를 거쳤던 우리 선배님들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 왔던 이 노력들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부처예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답을 다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승래 위원** 아니,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왜 머뭇거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또……

○**조승래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생각이 어찌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여러 논란적인 관점을 대한민국헌법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3·1, 대한민국의 그러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승래 위원 분명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왜 2개의 건국이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어떻게 제가 2개의 건국이라는 표현을, 저한테 지금 질문하십니까?

○조승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는 2개라는 표현을 안 드렸고 대한민국의 많은 건국에 대한 관점이 어떤 분들은 1919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든 국민들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919년이냐 1948년이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가지 모든 그런 과정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1919년과 1948년 건국이 둘 다 맞다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시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가 맞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한번 보시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만, 마무리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가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독립기념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그때부터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호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을 강조하고, 빼았긴 나라를 되찾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고.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 수립을 관점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을 1948년에 건국을 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제가 파악한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 다 맞냐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헌법을 중시하는 것……

○위원장 윤한홍 그만하시고.

○조승래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도 대답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둘 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마무리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각자의…… 아니, 장관의 입장을 얘기하라니까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타난 대로 임시정부……

○**조승래 위원**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하신 말씀은 뭔가 좀 와전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윤한홍** 그만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제가 지금 2개 다 맞다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속기록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1919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1948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헌법을 중시하고 거기에서는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법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어받는 것으로 헌법은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세요. 됐습니다.

○**조승래 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분 하셨기 때문에 제가 1분 뺏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사실 저까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답답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계셨는데 일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보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 문제가 됐던, 즉 청탁금지법 8조 4항의 입법 연혁을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를 좀 보시지요.

저게 처음에 보면 2012년 8월 22일 날 입법예고가 됐어요. 맨 처음에 공직자의 가족으로 됐다가 2013년 7월 8일 날 그다음에 8월 5일 날 거쳐서 마지막에 2015년 3월 3일 날 법사위에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현행법과 동일하게 수정됐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 규정과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렇게 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금지 규정인데 제재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입법의 불비면 국회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권익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 세 분들께서 아마 지금 이 법에 대해서, 금지 규정에 대해서 제재 규정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현재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좀 답답했었어요, 오늘 듣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죄송합니다.

○**柳榮夏 위원** 웃지 마시고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 柳榮夏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계속 한 게 피신고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실무에서 피신고자 조사 안 하시지요. 그렇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기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래서 이 법상의 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자 조사할 수 있고, 피신고자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중에 피신고자 조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러면 신고를 받았을 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백이든, 파우치 백이든 저것 백에 대한 동영상 또 전표 이런 동영상이 다 제출됐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언론 자료들을 저희들이 스크린을 했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저것은 명백하게 저 백을 받은 게 인정이 되고 백 받은 장소도 인정됐기 때문에 굳이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아도 받은 사실은 인정됐다는 거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래서 현장 조사를 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명확하게.

저기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 柳榮夏 위원 아니, 제가 참고인 조사를 누구를 했냐고 여쭙는 게 아니고, 필요한 참고인 조사는 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했습니다.

○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청탁금지법은 세 가지로 처분할 수 있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하나는 종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첩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송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래서 거기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거고, 그 결정은 전원위에서 어쨌든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서 채택이 된 것 아닙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직무 관련성 가지고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 이 의결서를 의결하게

되면 그 전제조건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거꾸로 피드백 해 가지고서 직무 관련성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사의 백 수수와 관련돼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가법상 알선수재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 **柳榮夏 위원** 부폐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 4호에 부폐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기억합니다.

○ **柳榮夏 위원** 거기에 가목에 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 부폐방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것이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지권이 있으면, 소위 검찰에서 말하는 범죄에 대한 인지권이 있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없습니다.

○ **柳榮夏 위원** 없지요. 없기 때문에 법에 명확하게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또 더군다나 부폐방지법에 의한 부폐행위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더라도 여러 타 법에 의율이 돼도 인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율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첩할 수 없는 것 맞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 **柳榮夏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물 관리 여부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의결서를 보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대통령께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래서 종결 처리하시지 않았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리고 보론에 보면 ‘가사 이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을 경우’ 이렇게 죽 설명하셨지요. 그렇지요?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래서 가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도

이러이렇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그것은 선물로 받아도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따로 신고 의무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처럼 또박또박 대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는 아마 부위원장님도 잘……

조금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재보충질의하시지 말고 1분 더 하세요.

○**柳榮夏 위원** 보충질의 3분에서 1분 쓰겠습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그렇게 합시다. 1분 주세요.

○**柳榮夏 위원**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예.

○**柳榮夏 위원**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지요.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그 행위 시에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됐을 때 충분히 이게 핫이슈가 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라고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셔서 정부를 대표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왜 자꾸 움츠리고 대답을 안 하고 그러십니까?

미안합니다, 목소리를 좀 높여서. 힘드실 텐데……

하여튼 간 앞으로 국감도 있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서 나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위원장 윤한홍** 원래 정무위 비금용 회의를 하면 거의 대부분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인공인데 오늘 거의 놀고 계세요.

제가 배달앱 관련해 가지고 당부를 좀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았으면 싶은데요.

지금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한 6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쿠팡이

츠하고 요기요 이게 한 35%쯤 돼서 한 95%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주로 식당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 다 불만이에요, 이 배달앱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그렇다고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면 결국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수익은 줄어들고 배달하시는 분도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앱 하는 사람들만 수익이 늘어나는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그것 다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것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소비자들은 잘 못 느껴요. 이 배달앱을 통해서 하다 보면 수입과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나 또 심지어 배달 업체까지 다 피해를 봅니다. 이익 보는 데는 방금 말한 이 3개 배달앱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이 3개 배달앱 회사거든요.

아직 초창기라고 누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안 만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책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에 자료를 주시든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한 10월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이게 바로 민생이에요. 그것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위원장 윤한홍** 아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잘 선뜻 못 하시고 독립기념관장과 다른 의견이 됐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다시 한번 위원장님, 조승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하세요.

독립기념관장님 일어나 보세요.

독립기념관장님, 언제 임명되셨지요?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21년 1월 달에 임명됐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21년 1월이요?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예.

○**위원장 윤한홍** 지금 그러면 얼마나 되셨지요?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지금 만 3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왜 아직도 계시네요?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후임 관장 선임이 안 돼서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거지요, 2021년 1월?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보훈부장관님께서 그 부분에는 주무장관이에요. 주무장관이 확실하게 의견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위원장님,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승래 위원님께서…… 저의 청문회 때 대답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했던 말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해야 하고 1919년의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건국 대통령에 대한 용어는, 동시에 건국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이라고요. 1919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었고 1948년 정부 수립 때도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훈부장관으로서도 말씀드리고 개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이 건국이 1919년이냐 48년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청문회와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헌법을 중시하고 그 헌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1919년이냐 48년이냐 하는 논란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던 지도자분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따라서 헌법으로 갈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 그만하세요.

보충질의를 다 마쳤고요.

○**강준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재보충질의를 안 한다고 그랬지 보충질의는 한다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윤한홍** 하세요.

안 한다고……

○**강민국 위원** 둘 다 보충질의 해야지.

○**위원장 윤한홍** 하는 거예요?

○**강준현 위원** 예.

○**강민국 위원** 재보충질의는 안 한다는 거고, 간사는 재보충질의는 안 하고 이 질의는 해야지.

○**위원장 윤한홍** 두 분이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존경하는 강준혁 간사님 먼저 하세요.

보충질의 7분 하세요.

짧게 하시고 중간에 시간 남아도 중단하시면 됩니다.

○**강준현 위원** 저는 짧게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자당 동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저 오늘 단단히 마음먹고 준비 참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마저도 ‘대답을 명확하게 하세요. 또박또박, 철저하게’ 이렇게 혼 좀 내셨는데, 제가 봐도 위원장님 준비가 너무 안 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권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지금 6개월 남짓 됐습니다.

○**강준현 위원**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재판부에 계셨으면.

정승윤 부위원장님한테 보고 같은 것은 안 받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아니,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하시는 것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정승윤 부위원장님 잠깐 좀…… 죄송합니다.

오늘 제 느낌인데, 질의 안 합니다. 제 느낌인데 오늘 하시는 것 보니까 모든 사안,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전원위원회 의결했다고 하지만 지금 느낌에는 부위원장께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스스로 혼자 판단하신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준현 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목표를 딱 설정을 해 놓고 방어하기만 바빠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질의응답 중에 전원위원회 15명에서 14명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 분이 왜 사퇴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한 분이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입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이시고 이미 국회에 저희가 민주당 후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강준현 위원** 아니, 왜 그분이 사퇴하셨냐고요, 이번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제가 답변하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의사인데 어떻게 제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강준현 위원** 언론 보셨지요, 왜 그분이 그만두셨나? 소수의 의견인데 의견이 완전히 무시당했지요.

또 하나, 아까 헬기 이송 관련해서 의결할 때 14명에서 2명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은 왜 의견 표출을 안 했지요? 그분들도 민주당 추천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민주당 국회의장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강준현 위원** 오죽하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시간은 동료 위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오늘 제가 답답해서…… 아까 인사말씀 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부패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있지만, 물론 대상과 범위가 다르겠지요. 국무총리님께 말씀 좀 해 주세요. 노력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오늘 내용이 다 부패방지, 뭐 청탁금지법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위원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굳이 국무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강민국 위원** 이번 권익위 업무보고 시간에 ‘권익위가 캠프에 의해서 어렵다. 정실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데자류가 되는데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있을 때…… 전현희 전 위원장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최고위원도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이 양반 계속 내가 부르고 했는데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 부단장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후보 광주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국정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에 그것 하는 사람은 같이 일하는 거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 그래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파우치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체라는 게, 물론 권익위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겠지만 최재영 뭐 목사인가 아닌가 그 양반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몰카 공작 사건이에요. 한번 봐 봐요. 이 양반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총회 남가주노회 소속이라고 자기가 주장했는데 미국에는 동부·서부만 있지 남가주라는 총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목회활동 했다는 LA 영광의빛교회는 아예 문닫고 있는 데고.

더 가관이 뭐냐니까 이 양반이 북한에 선교활동 한다면서 드나들면서 종북 인터넷 매체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이런 글을 올려요.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양반의 몰카 공작 사건 이런 것을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당

당하게 얘기하면 좋겠고.

그리고 참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꽤 차하셔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권익위가 도저히, 아까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작아지는 권익위, 야당 대표라고……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만 처벌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양반들 보니까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요청도 안 했는데 요청했다고 그래서 이 권개입, 알선·청탁 위반이라고 하고, 헬기 띄운 소방 관계자는 요청자 권한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 안 했다고 규정위반이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조사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권익위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안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또 부동산 전수조사 안 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도 위원장이 답변을 해 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히 지금 이 사건 행동강령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헬기 이송비용 누가 부담했는지 혹시 아세요, 조사 과정 중에?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소방본부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부산대병원이 잘 알다시피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잖아요. 이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외상센터로 이송됐잖아요. 그렇지요?

동료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특혜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에게도 이런 것이 제공되는지,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아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내가 지난 국감 때 질의했던 것 누가 조사하고 있어요?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나 국장이 누구냐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시장감시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시장감시국장 나와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시장감시국장은 배석해 있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내가 작년 국감 때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을 하면서 이것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의 거대 자본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가 법상, 환구시보라는 데서, 중국 공안 정부에서 우리 정보 다 빼 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국 안전법인가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 제가 잘 모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국감 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번에 쿠팡에 엄청난 부과금을 했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강민국 위원** 한국의 자기업은 두드려 잡으려고 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만약에 급성장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국내 제조업이나 산업 생태계가 다 파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물건이 전부 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강민국 위원** 그렇다고 제가 공정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지난 국감 때 알리익스프레스의 문제점을 레이 장인가 대표 불러 가지고 했던 것, 모든 위배되는 것 다 지적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해서 이미 알리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테무 관련해서도 곧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로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애들 기저귀까지, 애들 젖병까지 발암물질이 생겨 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원장님, 알리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 국내 산업만 붕괴하려고 공정거래위가 호랑이 노릇 하지 말고 해외 이런 것도 철저하게 동일하게 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저희가 국내외 기업 구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관련해서는 2021년, 2023년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런 안건이 하나 상정된 것이 있고 이외에도 알리, 테무 등 다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법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료제출입니까? 뭡니까?

○**이강일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보고받고 있는데 95%가 한 기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대한 건데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답변이 꼭 녹음기 켜 놓은 것 듣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의 답변이 내용은 잘 얘기 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랐다. 조사 사항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 개인정보라 어렵다. 신고자 비밀 보장이라 어렵다’,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학 문제 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수 의견에 따랐다고 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 우리 국민들 과반수 이상, 넉넉한 과

반수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 규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올백 수수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검찰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 때문에 좀 더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솟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좀 보십시오. 전부 과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지난 회의에서 여당 위원님들 제안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임했지만 역시 도저히 업무보고 질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지금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신고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받아 놨습니다. 그만큼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개회요구서 국회법 71조, 77조,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통해서 오늘 바로 안건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야당 위원님들 권익위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자료 비협조에 따라서 업무보고 의미 없다고 오늘 결론 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제3항 안건 업무보고 건을 지금 중단하시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권익위 청문회 개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해 먼저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합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고 권익위는 권익위의 일 한 겁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서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신청할 테니까, 자료제출할 테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새로운 의사일정 제안이 있는데 이 부분 의사일정은 간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협의를 해 주세요.

의사일정 협의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하도록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42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추가와 관련한 사항은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양 간사 간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재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한 분만 하세요, 지금 밤 늦은 시간이라서. 누가 하시겠어요? 한 분만 하세요. 시간이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면 조승래 위원 시간 드리세요. 2분만 드리세요, 2분만.

○조승래 위원 아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도 아니고 간사 간의 협의 사항도 아닙니다.

국회법 77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지금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조항인데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 71조에 보면 준용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7장', 이게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비공개회의 요구의 동의,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는 20명입니다. 그러나 20명의 동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종합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와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본회의 규정을 준용해 봤을 때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즉시 표결 절차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말씀 다 하셨습니까?

○조승래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국회선례집 2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하지 않고 정회·산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건 사례일 뿐이지요. 그건 사례입니다, 사례.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인 의견을 하지 마시고……

○한창민 위원 잘못된 사례입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 거지요.

○이정문 위원 국회법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국회법이에요. 국회법이라고요.

○이정문 위원 71조하고 77조에 따라 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법은 저거고 그건 사례지 않습니까.

○한창민 위원 잘못된 사례와 관행은 바꿔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잘못되지 않았어요. 앞에 한 사례를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여러분 선배들이 하신 일인데.

○한창민 위원 그게 잘못된 사례로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 그걸 관행하고 법규하고 비교하면 어떡합니까.

○조승래 위원 일방적으로 산회한 거라니까, 그게.

○위원장 윤한홍 2023년 3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10월 6일 복사위원회 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권한이에요.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한 거라니까요. 아니, 일방적으로 산회한 것은 국회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이강일 위원 산회를 한 거하고 다르지요, 지금.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의사일정 상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사 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정문 위원 국회법대로 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 아니, 그럴 재량이 없어요, 위원장님한테는.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재량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상훈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강민국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무위가 내로남불의 정무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주의자, 자칭 목사가 몰래카메라로 청탁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강일 위원 그걸 밝히자니까요.

○조승래 위원 아니, 종북주의자를 신원 검증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만납니까?

○김상훈 위원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만 논의를 하는데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와 관련된……

○신장식 위원 국회법대로 하세요, 종북주의고 뭐고.

○이강일 위원 그거고 뭐고 간에 법규가 있잖아요, 법규가.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시간 멈추세요.

아니, 발언하는데……

○조승래 위원 간첩죄로 입건해야 되겠네, 그러면.

○한창민 위원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는 회합을……

○위원장 윤한홍 발언하는데 계속 방해하시면 회의가 안 됩니다.

○이강일 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李憲昇 위원 의사진행발언 그쪽 했으니까 이쪽도 한번 들어 보소.

○조승래 위원 왜 종북주의자가 나오고 그래요.

○위원장 윤한홍 발언하는데 계속 방해하시면 회의가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법규대로 좀 해 주세요, 법규대로.

○李憲昇 위원 이쪽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일단.

○위원장 윤한홍 발언하는데 방해하시면 회의가 안 됩니다.

○이강일 위원 먼저 발언하세요.

○김용만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발언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면서 발언하라고 비아냥대고 그런 모습이 맞습니까?

김상훈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상훈 위원 시간 아직 체크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주의자가 몰래카메라로 청탁금지와 관련된 사안을 오늘 하루 종일 논의하면서 그걸 청문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오전·오후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의지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5건이나 됩니다. 만약에 그 청문회를 요구한다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청문회를 같이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양당 간사님께 제안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의사일정 변경 동의 내세요. 토론해 가지고 표결합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김상훈 위원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내시고 표결하시면 됩니다, 각각 2개의 청문회.

○위원장 윤한홍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쟁으로 가는 이런 의사일정은 간사 간 합의도 되지 않았지만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승래 위원 그건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정문 위원 국회법대로 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회의할 생각이 없다, 정회하자.

○위원장 윤한홍 그 의사일정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지금 재보충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상혁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 강행규정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입니다.

그러면……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한테 재량이 없으세요.

○김상훈 위원 왜 재량이 없어요?

○박상혁 위원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윤한홍 발언하지 마세요. 자기 발언 순서 때 하세요.

그러면 재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없으세요.

○김상훈 위원 뭘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 윤한홍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이걸 표결을…… 명확하게 재량이 없는 분이라고 짚어 드렸잖아요, 지금.

○이정문 위원 국회법의 강행규정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어디 있으세요?

-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상정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 김용만 위원 아니, 지금 법령을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 박상혁 위원 아니, 저희들이 동의한 게 있잖아요.
- 한창민 위원 이거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위원장 윤한홍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이강일 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주세요.
- 한창민 위원 이 법령이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
- 김남근 위원 아니,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지요. 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정리 안 되면, 소란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계속 소란스러우면 회의를 더 이상 못 합니다.
- 이강일 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주세요, 법령을.
- 박상혁 위원 우리가 표결을 진행하면 돼요. 표결을 진행하시면 된다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윤한홍 아니,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권한이 없으시다고요.
- 위원장 윤한홍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의 선례가 다 있습니다. 국회 선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장내 소란)

-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 위원장 윤한홍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강민국 위원 법을 말씀하시는 데 국회법 49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항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49조에 직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사일정도 말씀하시는 데 49조의2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가 있는데 위원회 개회일시, 소위원회, 국정감사 있는데……

위원장님, 염연히 이것은 위원장님이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 그리고 의사일정, 개회일시 까지 말 그대로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그것을 좀 가부간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 제가 상정하지 않겠고 그다음에 표결하거나 안 하거나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보충질의를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재보충질의를 안 하시겠다면 회의를 산회할 생각입니다.

- 재보충질의 1번이 김남근 위원님이십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상정 여부를 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 위원장 윤한홍** 아니에요.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 박상혁 위원** 예?
- 위원장 윤한홍**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 박상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 강준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강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 강준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 조율을 했어요.
- 강준현 위원** 의견은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견을.  
위원장님.
-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다 검토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결정을 수석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제가 올리기 위해서 표결하지 않습니다.
- 강민국 위원** 49조에 딱 규정돼 있어.
- 유동수 위원** 법을 넘어섰어요.
- 李憲昇 위원** 위원회 회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산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 천준호 위원** 안건 표결해 주세요, 표결을.
- 김남근 위원** 아니, 일단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 하시자고요. 정리를 하고……
- 위원장 윤한홍** 문제 다 정리됐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 김남근 위원**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 위원장 윤한홍** 제가 방금 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천준호 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표결해 주세요, 표결.
- 강민국 위원**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하셔도……
- 김남근 위원** 아니, 국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 위원장 윤한홍** 제가 국회법 따라서 회의를……
- 박상혁 위원** 아니, 어떻든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 李憲昇 위원** 한 번 더 합의를 하라고…… 위원장님, 한 번 더 합의하려면 정회하세요. 한 번 더 합의하려면 정회하세요!
- 김남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합의가 안 되면 안 한다……
-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 드렸고요.
- 재보충질의……
- 김남근 위원** 합의가 안 되면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천준호 위원 표결해 주세요, 표결.

○이강일 위원 무슨 얘기예요?

○李憲昇 위원 다시 한번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잠깐 다시 정회를 해서 간사 간에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 위원(24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남근 김병기 김상훈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조승래 천준호 한창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방기선

국무1차장 김종문

국무2차장 남형기

사회조정실장 김영수

청년정책조정실장 송경원

경제조정실장 김용수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손영택

민정실장 홍종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경영지원본부장 한영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차관 이희완

기획조정실장 이남일

보훈정책실장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황의균

기획재정담당관 이재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직무대행 하유성

독립기념관

관장 한시준

88관광개발(주)

사장 서정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사무처장 남동일

조사관리관 육성권

기획조정관 전성복

소비자정책국장 박세민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영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승윤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전담직무대리 김상년

심사보호국장 김옹태

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사무처장 이정렬

기획조정관 고은영

조사조정국장 남석